行政事務監査特別委員會會議錄

第20回平昌郡議會 第 3 號

平昌郡議會事務課

日 時 : 1993年 12月 3日 (金) 午前10時13分

場 所 : 平昌郡廳大會議室

議事日程

1. 1993年度平昌郡行政事務監査實施의件

審査된案件

1. 1993年度平昌郡行政事務監査實施의件(繼續) ——— 1 面

(10시14분 개의)

○ 委員長李相薰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평창군에 대한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함을 선언합니다.

위원여러분! 오늘로서 3일간의 감사 일정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산림과, 민방위과, 보건의료원 농촌지도소와 읍면으로 평창읍, 방림면 대화면에 대한 감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끝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1993年度平昌郡行政事務監査實施의件

(10시15분)

그러면 산림과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 합니다. 산림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山林課長鄭吳興 산림과장 오흥일 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함께 일하고 있는 산림과 계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산림과 주무계장인 이창규 자원조성계장을 소개합니다.

(자원조성계장 인사)

다음은 박증원 산림지도계장을 소개합니다.

(산림지도계장 인사)

현재 보호계장은 원주기독병원에 입원중에 있습니다. 때문에 차석인 엄기종 임업주사보가 참석했습니다.

(보호계 차석 인사)

우선 현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제출서류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으로서 저희 산림과에 소속되어 있는 직원은 모두 16명 정원에 현원1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과장인5급이 1명, 6급이 계장으로서3명, 7급이 3명, 8급이1명, 9급이4명, 청원보호산림직이4명, 계 16명으로 되어 있고,

자원조성계에는 7명, 보호계는 5명, 산림지도계는 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과장을 포함한 16명 전직원이 민유임야의 보호를 담당하여야할 면적은 평균 1인당 3,400ha 정도 됩니다.

다음 3페이지 입니다.

저희 산림기본 현황을 보고드리면 전국 임야면적이 646만7,000ha, 전국토 면적의 65%가 되겠습니다.

강원도는 133만7,000ha 로써 82%가 되고 평창군은 12만ha로써 전체면적의 83%를 차지하고 있어 전국대비를 해볼때 평창군의 임야면적은 약 50분의 1 가량이 되고 강원도 임야면적에 비하면 약 10분의 1정도가 되겠습니다.

소관별 임야면적은 평창군이 관리하고 있는 공유림과 타부처 소관을 합해서 53,000ha 로써 45%가량 되고 평창관리소가 관리하는 국유림이 55%가 되겠습니다. 임상별 임야면적은 침엽수가 62% 정도되고 나머지가 활엽수와 혼유림, 무임목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지이용구분을 보고드리면, 산림으로 계속 존치보존해야할 보존임지가 약 40,000ha 되고 비교적 개발이 용이한 준보존임지가 13,000ha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대산 국립공원구역에 편입되어 있는 총 산림면적은 23,000ha 인데, 그중에서 평창군이 7,000ha 로써 32%, 홍천이 19%, 명주가 49%로 3개군에 걸쳐서 23,000ha 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평창군에 편입면적중에는 국유림이 52ha 공유림이 111ha, 사유림이 1,800ha, 사찰림이 73%인 5,500ha 로써 사찰림이 대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천연보호림은 9개소에 75ha를 가지고 있어서 이것은 계속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보호수를 42본 가지고 있으며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질서한 채석이라던가, 산림훼손을 방지하기 위해서 산림법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채석및 산림훼손허가 제한지역을 일부 고시를 했습니다. 채석허가제한지역을 1,586ha, 산림훼손허가제한지역을 395ha, 총 1,982ha에 대해서는 제한지역으로 지정고시를 했습니다.

우리관내 제재시설은 7개소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현재 활발하게 운영이 되는 제재소는 2-3개소에 불과 합니다.

산림계 설립은 116개계에 4,87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관내 임업후계자는 4명이며, 임업후계자들이 가지고 있는 소유임야는 194ha가 되겠습니다.

독림가 인적사항을 보면 모범독림가2명, 우수독림가12명, 자연독림가6명을 합해서 20명의 독림가를 가지고 있으며, 그 독림가들이 소유하는 면적은 3,700여ha 조림한 면적만 해도 2,400ha 가 됩니다.

거주지별로 보면, 독림가중에 관내에 거주하는 사람이 9명, 관외에 거주하는 사람이 1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애림사상 고취를 위해서 산림청 시책으로 푸른숲선도요원을 지정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등 7개학교에 70명을 선발해서 선도요원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현황을 마치고, 사업추진현황은 유인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 [redacted] 산림과장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redacted] 주태원 위원입니다.

먼저 솔잎혹파리 방제에 대한 계획을 묻겠습니다. 지금 평창군 관내에는 금당계곡을 비롯해서 비지정관광지나 또 마을에 풍치림같은 소나무가 상당수가 계곡 또는 마을주변에 산재해서 있는데 본위원이 다니며 보니까 이 소나무들이 솔잎혹파리가 먹고 있어서 죽어가고 있는데, 이런 꼭 보호해야할 소나무들을 방제할 계획이 있는지, 또 방제한 사실이 있는지, 그문제를 소상하게 알려주시고, 그다음 자료에 보니까 산림계가 116개가 있다라고 하는데 이.동산림계를 말

하는 겁니까?

○ [redacted] 네. 그렇습니다.

○ [redacted] 그런데 산림계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조직이 되었는지는 모르나 과거 20년전인가 그때는 조금 산림계가 활성이 되어 조림,육림사업에 상당히 기여를 한것으로 알고 있는데, 근간에 와서는 이름만 남아있고 산림조합장 선거할때 산림계장이라 해서 몇년에 한번씩 참석하고 그렇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옛날에 산림계장이라는 사람들이 현재 살지도 않고 사망한 사람도 있고, 여러가지 형태로 전혀 있는것인지, 없는것인지 이런 유야무야한 상태에 놓여 있는데, 이것을 제대로 활성화할 계획이 있는지, 무슨단체던지, 무슨기구던지 명칭만 가지고 있고 필요할때 한몫써먹고 또 내버려두고 이렇게 해서는 되지를 않는것이니 어떤 조치를 할것인지, 그다음 톱밥생산 시범사업으로 예산도 반영이 되고해서 봉평 임업협업체인가 그곳에서 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백옥포 1리지역에다 건축물도 짓고 열심히 할려고 하는것은 보이는데 그 공장의 규모가 얼만한 기계를 가지고 하는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대지가 협소해서 도저히 되지 않을것 같은데, 그사람들보고 물어보면 충분하다고 합니다. 집은 조립식으로 지었는데 주변을 살펴보면 톱밥공장을 하면 우선 재료를 실어오자면 나무가 필요할텐데, 나무를 쌓아놓을곳도 없을것 같고 또 생산된 톱밥을 쌓아놓을곳도 없을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충분하다고 합니다. 그럼 아주 소규모로 톱밥을 생산해서 실어갈려고 하는건지, 그래도 실효성이 있도록 하자면 그런 대지면적을 가지고는 도저히 운영이 안될것 같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고 또 어떻게 앞으로 추진을 해 나갈것인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요.

이상입니다.

○ [redacted]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솔잎혹파리 방제에 있어서 금당계곡이라던가 비지정관광지 등에 방제실적과 방제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이것은 지금까지의 방제실적은 집단적인 방제는 하지 못했습니다. 산발적으로 마을숲이라던지, 꼭 보호해야할 그러한 나무들은 찾아서 수간주사를 놓아 방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것을 여러위원님들이 그동안 계속 지적을

해주신 것을 잘 귀담아 듣고 있습니다. 금년에 1,500ha에 수간주사를 놓았는데 내년도에 2,500ha로 물량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이유는 고속도로변만 방제를 해서는 안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일 첫째 저희가 고속도로변 2회에 방제대상지로서 금당계곡을 제일먼저 계획수립하는데 포함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지정관광지에도 전면점검을 해서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전면적 그 주위에 많은 면적은 놓지 못하지만 꼭 필요한 지역은 알뜰하게 찾아서 놓도록 책임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그리고 산림계의 법적근거는 역시 산림법과 산림조합법에 근거를 두었는데, 과거에는 정말 활성화 되어있고 근래에 실제 유명무실한것이 틀림 없습니다.

이사람들이 지금 지적하셨다시피 선거때나 모여서 선거나 하는 그러한 역활만 하지 크게 기여하는것이 없었던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산림조합법을 전면 개.폐지해서 임업협동조합법으로 만들었습니다. 공포되어서 12월 14일부터 시행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행이 되는 날부터는 산림조합의 명칭도 평창군임업협동조합으로 명칭이 바뀌게 되고 따라서 여기의 조합원의 구성도 법령으로 정해져 있는데 산림계는 일단 폐지가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그릇된 운영이라던가 이런것에 대해서 앞으로 시정할 방법은 없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톱밥생산시범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특별한 배려로 어렵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공동사업이다 보니까 공사도 벌써 관주도로 했으면 되었을텐데, 여러사람이 돈을 출자해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시기도 지연되고 했습니다. 공장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톱밥제조기 1대하고 그 부지에다 건물3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톱밥제조기는 1일에 큰 트럭으로 1트럭정도를 생산할수 있습니다. 원목 한 3,000재 정도, 그러면 10㎥인데 10톤 내외가 1일 생산 용량입니다.

그런데 건물의 규모는 가시다 보면 좌측에 있는 건물이 20평짜리 사무실겸 관리사고 가운데 벽면이 없는 지붕만 씌워놓은 건물이 100평인데 그것이 원목을 비가 맞지 않게 하기위한 원목 적치장입니다. 거기에 알아봤더니 약 90,000재 정도는 쌓을수가 있다는 얘깁니다.

그렇다면 30일분은 쌓을수가 있다는 얘깁니다. 또 우측에 있는 건물이 기계실 40평짜리인데, 기계실이 15평정도 되고 나머지 맨끝부분으로 칸을 막아서 톱밥저장고가 되겠습니다. 톱밥을 생산해서 그곳으로 바로 바람에 의해서 그쪽으로가서 적치가 되는, 그러니까 그곳에서 톱밥생산된것을 저장하는 창고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도 부지규모가 매우 협소합니다. 그러나 직접사업을 하고 있는 협업체에서 " 그만하면 되지 않느냐, 자기들도 좁은것은 느끼지만 우선 운영을 하면서 더 필요하면 다른방법을 강구해봐야 겠다"는 얘기를 합니다만, 저도 일단은 운영을 하면서, 좁게는 느낍니다만, 지금당장 부지를 확보하기도 어려운 형편이고 아마 나름대로 확보할 계획이나 방안은 가지고 있는 모양인데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illegible] 과장님의 소상한 설명을 잘들었는데요, 톱밥생산시범사업은 우리 평창군이 말 그대로 시범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간에 여러가지 군 재정이라던가, 이런 예산에 얽메여서 어려운 지원을 했는데, 이것은 과장님이 특별이 신경을 쓰셔서 지원이 되어 활성화 될수 있도록, 말 그대로 시범사업으로 해서 산림자원을 충분히 활용할수 있도록 해야지 지금 임업이라던가 산림자원은 충분한데 이것을 제대로 활용을 못해서 산주들이나 독림가들이 엄청난 고충을 받고 있는 처지는 과장님이 충분히 알고 계실겁니다. 모처럼 시범사업을 하는것이 소산주들한테 맡겨서 안되었다 했을때는 또 좌절하는 거니까 그렇게 안되도록 특별한 지원이 강구되어야 할것으로 생각하고, 신경을 쓰셔서 활성화 될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십시요.

○ [illegible] 추가해서 보고를 드리면 우선 지원대책으로 원료공급문제 피해목벌채문제도 가까운 거리에 봉평지역에다 집중적으로 봉평,용평 톱밥생산지역 근거리에 많이 넣으면서 못쓰는 나무를 원료화 하고 자원화 할수 있도록 해주고 있고 지원금을 보고드리면 7,200만원을 작년부터 지원을 했습니다.
작년도에 톱밥생산을 하는데 3,200만원을 순수한 도비로 지원을 했습니다.
이것도 저희군에서 사실은 욕치를 했다고 할까, 평창군에다 해야 하지 않느냐 해서 했고, 금년에도 4,000만원을 지원

했는데 도비 2,500만원에 군비 1,500만원입니다. 그러면 군의 특수사업이면서 군비1,500만원에 나머지 5,700만원을 도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 지원을 많이 받고 있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군비지원을 다소해야할 실정에도 있습니다.

○ [redacted] 주위원님 말씀하신 톱밥공장에 대한 문제를 보충해 질의드릴려고 합니다.

감독권이 군 산림과에도 있습니까?

○ [redacted] 당연하지요.

○ [redacted]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이나 추진과정이 상당한 의혹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얘기를 간접적으로 들으셨으리라 생각이 되는데, 부지가 협소한 곳으로 결정이 된것도 협업조합원들은 잘 모르는 내용인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도 알기에는 그위의 넓은 부지가 대상부지로 알고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밑의 부지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의문점을 조합원들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앞에서 독선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아니냐, 감독관의 묵인하에 말이지요. 그런 의혹이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redacted] 그것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 [redacted]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도 그 부지가 장래성이 없고 협소하다는 것을 인정 하시지요?

○ [redacted] 그런데 그 부지를 처음에 부지로서 적격하다고 인정을 한것은 그 지역이 이용가치가 없는 피해목이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원료 확보에 용이하다는 문제 한가지 하고, 그다음 전기라던가 동력을 인입하기에 용이하다 또 1단지 소면적의 토지를 매입할수 있다는 사항 가지고 저희가 승인사항은 아닙니다만, 사업계획을 그대로 인정해서 처리를 했는데, 그런 의혹이라던가 이런 것은 모르겠습니다.

○ [redacted] 아신다고 하더라도 알고 있다고 답변하기는 좀 곤란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확실히 누가 보더라도 그사업에 관련이 없는 제삼자가 보더라도 아주 장래성이 없는쪽으로 사업을 처리했다고 누구나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위에 땅이 없다면 모르지만, 얼마든지 부지를 확보할수 있는 지역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말씀하신 동력인입 관

계라던가 자료관계등 여러가지 문제는 그지역이 어디던지 다 가능하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하필 그렇게 좁은, 협소한 지역을 선택해서 했는지 많은 여론들이 있다는것을 과장님께서 꼭 기억을 하시고 앞으로 그런것을 감독하시는 입장에서 철저하게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 [redacted] 알겠습니다.

○ [redacted] 위치문제는 별도로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는것이 92년도에 의회에서 현지확인을 할때에 의원들은 그런것을 원치 않았는데 협업체에서 자기들이 이렇게 추진하는데 위치가 여기다 하고 한번 위치를 알려준적이 있습니다. 그당시 어느 과장님이 나오셔서 뵙고 그래서 저희 의원님들이 함께 그 위치를 가본적도 있었습니다.

그럴때는 지금 공장을 건립하는 그곳이 아니고 그곳에서 조금더 올라가서 바위돌도 있고 이런 쓸모없는땅, 황무지같은 땅이 아주 널직한게 있어서 이런곳을 활용하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그곳이라고 알려 줬는데, 금년에 와서 시설물을 짓는과정은 그아래 농경지하고 산비탈을 정리해서, 정말로 장래가 없어 보이는데, 상당히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부탁 드립니다.

○ [redacted] 알겠습니다.

○ [redacted] 곽문춘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우리 관내에 임업후계자가 2명이라고 하셨지요?

○ [redacted] 4명입니다.

○ [redacted] 4명인데 임업후계자도 보통 영농후계자처럼 정부에서 지원하는것이 있습니까?

○ [redacted] 융자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 [redacted] 얼마를 해주고 있습니까?

○ [redacted] 장기저리 융자를 해주고 있는데 임업매입 자금이라던가, 산림경영자금이라던가, 이런것을 융자해주고 있는데, 그것은 당해년도 융자계획에 의해서 매년 달라집니다만, 산림개발기금융자를 년리3%로 상한선은 1인당 1억 한도까지 융자를 해줄수 있도록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 [redacted] 그러면 그것에 대한 임업후계자 선정기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한가지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솔잎혹파리 피해목 벌채 허가에 대해서 지금 산주들이 여론이 많은것은 벌채허

가에 대해서 완전 고사목에 대해서만 벌채를 해주고 약간 푸른기만 있어도 허가를 안해 주어서 산주들이 많은 손해가 있다는 여론이 많습니다. 실지로 완전히 죽은다음이라야 벌채허가를 내 줍니까? 완전히 죽은후에는 가치도 없고 쓸모가 없고, 살아있을때 허가를 내주어야지 용재로도 활용할수 있고 산림피해가, 산주들의 손실도 적다는 애기가 많은데, 허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요.

○ [illegible] 이 솔잎혹파리의 벌채의 기준은 피해정도를 신.경.중 이렇게 세가지로 구분합니다. 그런데 전국적인 기준은 중 이상을 벌채 가능하도록 규정화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 이상의 면적은 저희 솔잎혹파리 발생면적의 70% 이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 관내에는 솔잎혹파리가 심하다는 애기지요. 그러면 산림청의 기준대로 벌채를 허용한다면 거의 솔잎혹파리 피해목은 방제고 뭐고 벌채를 해야된다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 군의 실정에 맞도록 심한것 이상만 벌채를 하자는 방침을 세워서 벌채를 하는데, 그면적도 대충조사를 하니까 3,270ha 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박위원님 말씀하신것 처럼 푸른기가 조금만 있어도 안된다 하는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봐서 소생가망이 없다고 판단될때 이것을 베는데, 소생가망이 없는 그 판단기준은 무엇이냐 할때 상당히 애매모호한 점이 있는데, 작년에 의욕적으로 산주입장만 고려해서 벌채를 하다보니까 상당히 파란 나무도 많이 베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점검을 나오고 산림청에서 점검을 나오고 해서 난리가 났던 일이 있는데, 그러한 과정에서 담당직원들이 미숙해서 선정과정에서 파란것도 포함되고, 그렇지 않은것도 포함되고 이렇게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저희는 심한것, 이것은 아무래도 소생가망이 없다는 것을 벌채대상으로 해서 전부 벌채하도록 했는데 일단 오해를 없애기 위해서 12월중에 전 산주에게 피해목 벌채 희망사항을 신고하라고 홍보를 했습니다. 각리에다 게시를 하고 홍보를 해서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내산에 솔잎혹파리 피해가 심한데 이것을 언제 베겠다. 베는데는 보조까지 원하느냐, 순수하게 보조도 상관없고 자력으로 베겠다" 등등 필요한 신고를 받아서 저희가 집계를 해서 일제히 조사를 할려고 합니다. 조사를 해서 전체를 한꺼번에

못베니까 이것은 94년도에 베어야 겠다, 이것은 더심하니까, 이것은 95년도까지 베어도 재질의 손실은 크게 없겠다, 이 지역은 도로변이고 경관을 저해하니까 이것은 앞당겨 베어야겠다, 이것은 오지고 그러니까 늦게 베어야겠다는 등등 지역과 피해정도를 감안해서 년차별로 그렇게 오래끌수 없고 94,95년도 양년간에 일단 솔잎혹파리 피해목의 벌채는 끝내버릴려고 합니다. 그다음 다시 피해가 나서 또 벌채대상이 발생되는 것은 정상적으로 해나가겠지만, 기본의 피해가 되어 문제가 되는것은 94,95년도에 끝나겠습니다. 그래서 양년차 벌채계획을 세워서 계획적으로 산주에게 통보를 해주어서 귀하의 산은 언제 벌채를 하게 되었다는 통보를 해주어서 명쾌한 최소한 민원을 줄일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려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내에 모든 피해조사와 신고를 받는것을 끝낼려고 합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계획적으로 피해목벌채가 이루워 진다면 피해목벌채로 인한 문제는 상당히 해소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 임업후계자에 선발에 대한 자격요건은, 일단 40세 미만의 자로서 소유산림이 소재하는 군내에 주소를 두고 산림경영을 현재 하거나, 앞으로 경영하고 싶은사람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선발은 시군 임업후계자 심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산림조합장, 임업후계자, 독림가 몇사람으로 구성이 되어 거기서 심의를 해서 하도록 되어 있고, 별다른 자격은 없습니다. 자기 산림을 가지고 40세미만으로서 의욕적으로 산림을 경영해서 선도적인 역활을 해 볼만한 사람, 그런 의욕을 가지고 있고 그런사람을 선발합니다.

○ [redacted] 이치억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부대비 관계에 대한 각종 증빙서를 요청을 했는데, 이 지출부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또 증빙서를 말씀드렸는데 없습니다. 94페이지를 봐 주십시요. 거기 보면 93산지정화 감시원 배치현황, 그런데 8월 한달을 하고서64만5천원씩 8개읍면에다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임명을 산림과에서 하는 겁니까?

○ [redacted] 면에서 요청이 들어와서 면에서 배치를 해달라고 해서 면에다 배정을 해서 면에서 배치를 한겁니다.

○ [redacted] 산림과에서 지시를

해가지고 읍면에서 선정을 해서 한달동안 감시를 했다는 얘기지요? 예산도 여기서 읍면으로 가면 거기서 집행을 합니까?

○ [redacted] 네. 그렇습니다.

○ [redacted] 그러니까 이것이 중점 배치장소가 평창읍은 남산,뇌운계곡 미탄은 기화계곡, 방림은 천제당,수동계곡 이런데, 산불감시원 하고 틀리는 겁니까? 이것은 뭐하는 겁니까?

○ [redacted] 이것은 산지정화를 위해서 산지오염방지를 위해서, 비지정관광지 주변을 중심으로해서 여름한철 쓰레기가 넘치는 이것을 대책을 세워달라는 건의가 계속 있고 해서 각 읍면에 다 1명씩만 한번 효과적으로 사용해보라 해서 읍면에서 특히 중점적으로 정화를 해야겠다 해서 읍면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자금을 배정해준 겁니다.

○ [redacted] 상부관서의 지시가 있었겠지요?

○ [redacted] 네. 그렇습니다.

○ [redacted] 군 자체에서 하는 겁니까?

○ [redacted] 산지정화 계획은 산림청 시책입니다.

○ [redacted] 군비입니까?

○ [redacted] 이것은 군비입니다. 이것이 당초의 사업비는 2,000만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쓸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1개면에 1명정도만 도와주자고 해서 1명씩만 1개월 동안만 감시를 했습니다.

○ [redacted]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느계곡 그러면 그 계곡 이웃에 사는 사람을 임명하는 것이 좋겠는데 여기보면 그런사람이 아닙니다.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이 이해가 가시지요?

○ [redacted] 네.

○ [redacted] 그러니까 도시사람들이 와서 개인탠트도 치고 밥도 해먹고 할려면 그집 근방에 있는 사람이 한달에 65 만원 받고 아침 저녁으로 보고 해야 할텐데, 뚱딴지 같은 사람이 하는지 않하는지, 돈만 받고 말았는지, 분간을 할수 없을것 아닙니까?

산림과에서 나가서 지도도 안했을 것이고 면사무소에서 했을 것이고, 그런데 미탄은 이런사람이 없습니다.

미탄면 회동리에 이상모라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것좀 확인해 보십시요.

이상입니다.

○ [redacted] 알았습니다.

○ [redacted] 추가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그사람들의 근무 일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군에 있습니까?

○ [redacted] 면에 있을겁니다

○ [redacted] 그럼 팩시밀리로 받아볼수 있지요? 가능합니까?

○ [redacted] 확인해 보겠습니다.

○ [redacted] 팩시밀리로 받아서 자료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 끝에 실음)

○ [redacted] 끝나면 곧바로 갔다 주십시요.

○ [redacted] 네.

○ [redacted] 잠시 답변을 중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한후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2분 감사중지)

(11시12분 감사계속)

○ [redacted]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산림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가 바랍니다.

○ [redacted] 김종영 위원입니다. 국제트렌스 산림복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유인물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만, 수해복구라 해서 상당히 지역주민들 여론과 또한 후속조치가 안되어서 문제점이 조금 있었습니다만, 몇일전에 수해로 인해서 토사가난 흙을 누가 손도 안대고 해서 면사무소에 얘기해서 사실 지원을 받아서 처리가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복구에 대해서 재판중에 있는줄 알고 있는데, 일단 재판과정이 끝나게 되면 승소여부하고 승소하게 되면 복구가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redacted] 지난번에 특위 조사도 받았는데 뭘 면목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당장에 할수 있는 사항을 복구를 못한것은 아니였습니다. 그점 이해해 주시고, 행정심판청구는 8월 18일날 청구를 했는데, 11월 9일날 기각처분 되었습니다. 이의 없다고, 말이 안된다고 청구 기각을 하고 행정소송만 남아 있습니다. 행정소송을 1차, 2차 수행을 했는데, 11월 30일 2차행정소송 수행을 했습니다. 왜 이런 법적 근거가 있는가 하면 보험법에 보면 보험금의 청구는 어떠한 소의 계류가 있거나 그러면

보류할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묘한 규정을 가지고 법률을 너무 잘아는 사람들이 자꾸 지연을 쓰고 있는것은 틀림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대항을 해야 하는지 고민인데, 일단 행정소송도 언제까지 끌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행정소송과 관계없이 담당판사를 방문해서 충분한 얘기를 전달하고 그 전망을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고 행정소송이 끝나면 바로 보험금을 지불하겠다고 보험회사에서 약속이 되어 있으니까 행정소송이 끝나면 바로 복구는 착수가 됩니다. 설계는 이미 되어 있습니다. 이문제는 행정소송만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다른 특단의 방법도 강구해 볼려고 합니다. 예를 든다면, 건설하는 사람들이 그정도 해놓고 이것이 복구가 다되었다 하고 준공검사 신청을하고, 준공검사 신청을 거부하니까 그것이 못마땅하다고 행정소송을 하고, 또 행정심판청구를 하고 이런 사람은 뭔가 건설업 면허를 잘못 받은것이 아니냐 해서 건설업 면허를 해준 경기도지사에게 일단 여기에 대한 재재요청을 해볼려고 합니다. 또 보험금에 대해서는 증권감독원이 있습니다. 증권감독원에다가 저희가 별도 제소하는 문제도 검토를 해서 그러한 절차가 필요하고, 가능하고, 또 할필요성이 있겠다고 하면, 년내에 그러한 절차를 전부 해놓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 [redacted] 지금 횡계지역은 겨울에 땅이 얼고 눈이 많이 오기때문에 해동기에 가서는 상당히 물이 많이 내려오고 또 수해피해날 문제점도 사실 있습니다. 과장님 이문제는 철저히 추진하셔서 앞으로 문제점이 생기지 않도록, 빨리 해결이 될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redacted] 지역주민들 얘기도 수해도 수해지만 해빙기에 눈사태도 상당히 위험하니 그것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도 좀 신경을 써줘야 좋겠다는 주민들 얘기를 들었습니다. 때문에 그 문제는 꼭 사전계획을 했다가 만일 그러한 일이 없도록 그건은 책임관리 하겠습니다.

○ [redacted] 알겠습니다.

○ [redacted] 박용태 위원입니다. 93년도 주요사업을 보면 크게 나누어서 다섯가지로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 조림사업중 금년도 사업은 끝났습니까?

○ 山林課長 吳興一 네. 끝났습니다.

○ 朴容泰 委員 육림사업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 山林課長 吳興一 육림사업도 끝났습니다.

○ 朴容泰 委員 솔잎혹파리 방제사업은 끝났습니까?

○ 山林課長 吳興一 솔잎혹파리 방제사업은 피해목벌채만 300ha 계획중에서 30ha정도 아직 추진중이고 나머지는 끝났습니다. 지면약제 살포도 이서류 제출할 시기에는 추진중이였는데 이것도 11월 30일날로 끝났습니다.

○ 朴容泰 委員 임도시설도 끝났습니까?

○ 山林課長 吳興一 임도시설도 11월 30일로 끝났습니다.

○ 朴容泰 委員 그중에서 조림사업이 금년도 직영한것이 있습니까?

○ 山林課長 吳興一 직영한것은 없습니다.

○ 朴容泰 委員 육림사업은 ?

○ 山林課長 吳興一 육림사업은 군유림에 대한 육림사업만 직영을 합니다.

○ 朴容泰 委員 그러니까 산림조합에다 이관시키지 않고 과에서 직접 직영을 합니까?

○ 山林課長 吳興一 그것은 군유림에 대한 사업을 직영을 했습니다.

솔잎혹파리의 방제사업 수간주사는 산림조합이 했고, 지면약제살포는 직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피해목 벌채는 산주가 하겠다는것은 산주에게 하도록 허용하고 산주가 어렵겠다고 한것은 산림조합으로 하여금 대집행을 시켰고, 또 도로변에 단목으로 무질서하게 보기싫은것은 도급을 주기도 곤란한것은 저희가 인부를 사서 전노선을 쭉 제거를 한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29ha 입니다.

○ 朴容泰 委員 직영사업에 대해서는 몇%를 공제합니까?

○ 山林課長 吳興一 직영사업이라는 것은 인부임을 다 지불하는 겁니다.

○ 朴容泰 委員 산림조합에는 몇%를 주는 겁니까?

○ 山林課長 吳興一 산림조합에다가 우리가 계약할때는 최소한도의 경리관이 예가를 조정할때 일부 감시키는 액수만 남는거지요.

○ 朴容泰 委員 부대비는 전액 다 줍니까?

○ 山林課長 吳興一 부대비는 저희가

직접관리를 합니다.

○ [redacted] 그러면 금년도 끝난 사업은 자금은 다 지출되었습니까?

○ [redacted] 사업이 끝난중에서 지금 솔잎혹파리 수간주사는 자금집행이 끝났고요, 그다음 지면약제살포는 아직 정리단계로 아직 안끝났습니다.

솔잎혹파리 피해목벌채는 저희가 직영을 한것은 그때그때 고용한것이니까 주고, 산주가 한것은 아직까지 안나갔습니다.

○ [redacted] 산주들이 한것은 돈을 찾을때 경리계에서 찾는것 아닙니까? 본인들이 직접와서 찾아갑니까?

○ [redacted] 일단은 저희사업과에다가 그 사업을 다했으니 돈을 주십시요 하는 보조금 교부신청을 하면 저희가 현지확인을 해서 이것은 계획대로 실행이 다되었구나 했을때 복명서를 붙여서 모든서류를 경리계에다 의뢰를 하지요.

○ [redacted] 제가 요전에 과장님한테 사적으로도 말씀드린적이 있습니다만, 그 사업이 끝나고 자금을 찾으로 오면, 이서류를 갖추라는것이 간소화 된것이 아니라 종류가 더 많습니다.

돈을 찾으려면 서류 하나 만드는데 일곱가지 여덟가지 만들어서 그것도 몰라서 한가지 만들어 가지고 가면 또다시 해오라 하면 또다시 가고, 5-6회씩 돈한번 찾을려고 드나들고, 거기다가 인감까지 첨부하라고 하는데, 온라인 통장에다 넣어 주는것이 아닙니까?

○ [redacted] 그렇지요.

○ [redacted] 실명제가 되었으면, 지금은 본인한테 붙여주면 그만인것을 인감까지 첨부하라 하니 주민들한테 여론이 많습니다. 서류에 대해서 간소화하는 방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redacted] 지적해주신 것과 같이 서류는 저희 사업주관과가 챙겨야 할 서류는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것이 국한되어 있습니다. 다만 산주가 불편해 하는것은 인감증명을 첨부하는것에 대해서 상당히 불편해 하는것 같습니다. 어떤때 보면 인감증명을 사전에 끈어주었는데 그것이 기간이 지나면 다시 끈어달라니까 그것이 어렵기 때문에 사실 종전부터 저희 사업주관과의 입장에서는 이 인감증명이 필요치 않을것 같아서 몇년전부터 개선요청을 수차 했습니다. 그랬더니 재무과에서는 그당시 간혹가다가 이것이 가명으로 나갈수도 있을것이

니까 이것은 산주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것이다 라고 이해를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에 실명제가된 이후에는 다른 방법이 없지요. 가명으로 어떻게 할수 없는거지요. 그러니까 인감증명은 확실하게 불필요한 서류로 생각이 됩니다. 산주가 불편하다고 느끼는것은 인감증명이니까 인감증명만 없애면 그외에 필요한 서류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작성할 서류들이기 때문에 산주가 불편한 서류는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개선이 되도록 같이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redacted] 산주들이 돈한번 찾을려면 군청을 열번이상 드나들어도 돈을 찾을까 말까 정도라서 상당히 애로가 많은것으로 여론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가급적이면 간소화 해서 불편함을 해소시켜 주는 방향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redacted] 감사합니다.

○ [redacted]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중에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림면 규석광산 주식회사는 1992년 10월 28일자로 강원도지사로 부터 채광변경허가를 득하고 동년 11월 17일날 방림면 방림리 산261번지 14,715㎡에 군유림 대부계약을 평창군수와 체결하고 11월 20일날 평창으로부터 방림1리 산261,263 일대에 25,255㎡규모의 산림훼손 허가를 득하여 동년 11월 25일부터 채광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 [redacted] 네.

○ [redacted] 산림과장님은 당시에 현지답사시 지역주민들이 버섯봉 광산허가가 절대 허가를 내주면 안되겠다는 여론이 상당히 많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때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적이 있는지요? 그때 당시의 본위원이 얘기를 듣기로는 과연 버섯봉 허가를 내줄때에 주민들의 반대여론이 많기 때문에 찬성, 반대에 대한 조사 결과는 주민들이 내주면 안되겠다는 여론이 많은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민들이 버섯봉의 허가를 반대를한 원인은 본위원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다시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환경오염이 됩니다. 또 풍수지리설로 맥을 끊으면 안된다, 또 방림1리, 5리 2개리에 간이상수도를 산에서 내려오는 물을 먹고 있는데 이것이 발포나

어떤 공사과정에서 앞으로 물이 떨어질 염려가 있다는 등등의 지역주민의 여론이 상당히 많았던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수습하기 위해서 방림규석광산측과 주민들과 여러분 회의를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회의가 92년 12월 20일 회사측에서 협상하는것으로 내놓은것은 환경시설에 대한 시설을 보완하겠다, 또 버섯봉 상단부까지는 공사를 안하겠다, 또 올라가는 진입로 1.6km를 회사에서 공사를 해주겠다는 것이 회사측의 절충안이고 주민들이 여기에 반대를 해서 결국은 12월 20일날 2개리 주민들이 반대촉구 구성위원회를 조직 했습니다.

이회사하고 주민들하고 갈등이 생기는 과정에서 회사측에서는 이왕 그자리에다 허가를 낸것이니까 고집을 해서 하겠다고 하고 주민들은 관계요로에다 진정서를 냈습니다. 진정서는 감사원, 교통부, 강원도지사에 4회에 걸쳐서 진정서를 냈는데 이것이 하나도 신통한 답변이 내려오지 않아서 주민들이 과거에 262번지 자리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4가구 정도 주민들이 살고 있는데 70년대 새마을 사업을 할때에 그때당시 경운기도 나왔으니까 농사를 짓기 위해서 자기땅에다 본인이 농로를 닦아서 수십년 농사를 짓고 살아 왔는데, 허가를 내다보니까 행정측에서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 농로로 다니기를 고집하고 주민들은 반대를 하는 과정에서 못다니게 차단하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후에 방림 규석광산은 춘천법원 영월지원에다 도로통행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그래서 토지소유자 김진수,홍완표등 이사람들을 출두명령을 소환장을 발부해서 이사람들이 93년도 3월 26일날 영월지원에 출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가 방림규석광산이 승소판결을 득한것입니다.

이렇게 주민들이 원치않는 허가를 내준 경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요.

○ [redacted] 이지역은 광업법에 의해서 채광계획인가가 이미 난 지역이고 또 그당시 일부주민의 반대의사는 진입로 통행의 분진때문에 농사가 잘안될것이다 하고 그다음 간이상수도의 피해를 볼것이다, 그다음 버섯봉은 우리 면의 상징이다, 그다음은 환경오염으로 인해서 평창강이 망가질것이다 라는 크게 몇가지 사항을 애기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검토해본 결과, 진입로

의 분진관계는 그 개발행위자가 포장을 해서 해소를 하겠다고 계획이 되어 있고 포장만 한다면, 그도로를 사용하는 그 주변의 농민들도 상당히 이익이 될것이다, 도로가 형편없었거든요.

그다음 간이상수도 문제는 어떠한 큰산에 전면에 있는것이 후면에 일부 폭파로 인해서 간이상수도가 피해를 보지 않겠다는 여러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다음 풍수지리 문제도 확대개발은 않겠다, 지금현재 버섯봉으로부터 그 거리가 약1.4km 정도 되는데, 그 버섯봉까지 올라가지 않겠다 그다음 환경오염문제는 저희가 육안적으로 봐도 그 하천이 건천이고 또 1.7km나 내려가야 본 하천과 합류되고 또 그것에 어떠한 방비시설만 한다면 하천의 오염이 없을것이다 해서 허가를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요즈음 1.7km에 대한 진입로 양쪽에 진입로가 붕괴될까봐 토지소유자들과 전부 협의를 해서 옹벽을 전구간 설치해서 피해방지 시설을 다 해놓았습니다. 환경오염방지에 대해서도 방지시설에 방비시설을 했기 때문에 현재 흙탕물이나 이런것이 하천에 비가 오더라도 전혀 내려오지 않고 맑은물만 흘러 내려가고 있고....,

○ 李相薰 委員 알았습니다. 본위원이 출신지가 방림면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부대시설은 잘알고 있습니다.

본위원 생각은 행정이라는것이 무엇때문에 있습니까? 주민을 위한 행정, 주민이, 더구나 방림1리 방림5리 약150농가가 살고있는데 그 농민들이 대부분이 버섯봉 광산인허가를 내주면 안된다는것을 과장님 사전에 알고 계시면서 그렇게 법원에 소송까지하고 또 개인이 수십년 농사짓고 있는 농토에 경운기 다니기 위해서 도로를 개설해 놓은곳에 광산인허가를 내주고 방림규석광산은 광산할 목적으로다 다닐려고 하니 못다니게 해서 주민들하고 야기가 생겼는데 그것을 수습을 못하고 이 도로로 굳이 다녀서 광산을 하겠다는 욕구를 가지고 농민들을 상대로 해서 법원에다 통행을 방지한다고 해서 법적소송을 제기해 가지고 승소로까지 법적투쟁을 하고..., 과장님 과연 우리 평창군의 산림행정을 주민위주로다 할려고 하는 의사가 있느냐, 아니면 어느 특정인의 과업이나 허가를 해주는 그런방향으로 행정을 수행하는 것인지, 왜 광산허가를 주민들이 반대를 하면 허가

를 하지 말아야지요. 물론 거기에는 충분한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허가를 해야하는 필연적인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지금 지역사회의 여론내지 군내의 여론도 굳이 주민들이 싫어하는 반대하는 광산허가를 해줘서 과연 그 기업들이 지역주민들에게 기여하는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발포나 하고 먼지나 일구고, 광산이 들어와서 지역에 기여할것이 뭐 있습니까?

그리고 법적인 문제는 완전히 해결이 된겁니까? 승소판결이 된것이니까?

○ [redacted] 법정의 승소라기보다도 현재...,

○ [redacted] 대법원의 판결을 적용해서...,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 농민들이 법이라는 것을 잘 모르고 사는데 느닷없이 허가를 해줌으로 인해서 영월법원에서 왔다갔다 하게 만들어 놓고, 이것은 본위원이 지난해에 평창군수가 방림면 초도순시때 데모를 만났습니다. 본인도 관내에 처음 오시는 군수님의 초도순시고 해서 주민들한테 나가서 설득을 강요다가 본위원도 멱살도 잡히고 욕도 먹고 그런일이 있습니다.

이 인허가 관계는 좀더 심사숙고해서 내주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 문제는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시간관계상 줄이겠습니다.

산림과장님은 채광허가 자체를 변경한날부터 규석광산에다 허가를 내야겠다는 내용을 과장님은 사전에 잘 알고 계시면서 왜 허가를 내주었습니까? 그 결과 과 엄청난 사회적인 물의를 야기시키고 농민들이 강원도지사한테 해도 안되고 청와대에 해도 안되고, 교통부에도 해도 안되면 백성이 누굴믿고 살겠습니까?

본위원의 생각에는 허가 자체를 취소할 수 없습니까?

○ [redacted] 현재는 허가취소할 필요도 없구요, 왜냐하면 주민하고 기업체간의 원만한 해결이 되었기 때문에 서로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redacted] 주민하고 어떻게 해결이 되었습니까?

○ [redacted] 진입로에 반대했던 토지소유자들이 다 동의를 해서 그 토지옆의 옹벽까지 설치할수 있도록 전부 허용해 주었고, 지금현재 진입로를 통행하는데 조금도 불편이 없도록

○ [redacted] 과장님 토지소유자가

가장 핵심적인 인물이 김진수, 홍완표 입니다. 허가를 내줄당시에 이사람들이 동의서를 안해주었잖아요?

○ [redacted] 다 해결 되었습니다.

○ [redacted] 허가를 해주기 전에 광산 인허가 절차상의 회사에서 제출할 때에 회사에 동의서를 안해 주었습니다.

○ [redacted] 동의는 허가의 요건은 아닙니다.

이런것이 있습니다. 위원장님이 지적하셨다시피 각종 감사원,청와대, 사방 주민들이 진정을 했는데도 명쾌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소송을 해도 번번히 안되더라 하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큰 흠결이 없기 때문이거든요. 만일 그당시에 허가를 안해주었다 하면, 주민이 반대하기 때문에 안됩니다 하는 이유로 허가를 안해줬다라고 하면 그건 행정소송은 당연한 얘기고, 또 그렇다면 행정소송에 우리가 승소할 전망도 없는것 아닙니까? 그러면 다시 행정소송에 패소해서 허가를 해준다면 행정 관청이 오히려 공신력이나 위신력 같은것이 실추되고 또 거기에 대한 관계공무원에 대한 여러가지 신분상의 조치가 따르고 여러가지 폐단이 있지요. 그래서 여러가지 생각을 해서 했는데,

○ [redacted] 인허가 관계는 신청만 하면 꼭 해줘야 합니까?

○ [redacted] 그건 아니지요. 특별한 이유가 없는한은, 해주지 못할것을 허가를 했다하면 지금와서 취소가 가능 하겠지요. 그러나 그러한 취소는 지금 현재로서 전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 [redacted] 그다음 사유림 임도 시설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이 군정질문때도 질문을 한 내용입니다만, 산주가 부담하는 자부담금액을 그날 답변에 받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렇지요?

○ [redacted] 네

○ [redacted] 자부담을 왜 못받았습니까?

○ [redacted] 산주가 내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었나 하면 사업비의 편성기준이 100%중에서 국비50%, 지방비40%, 지방비 40%중에서는 도비30%, 군비70%, 그리고 자부담 10% 해서 사업비 100%가 편성되는데 [redacted] 시설을 할때에 거기에 걸리는 산주들이 있지요. 그러면 해당되는 산주들한테

동의서를 받는데 아주 바쁩니다.
임도를 닦는데 동의를 잘 안해줍니다. 그런데 하물며 자부담금 얘기가 물론 하긴하지만 전혀 씨도 안먹는 실정입니다.

○ [redacted] 방금 산림과장님께서 방림 규석광산 동의서가 필요가 없다고 하셨는데, 사유림 임도시설에 대해서는 동의서를 받아야 합니까?

○ [redacted] 모든 사유림 임도뿐만 아니라 국도를 닦던 고속도로를 닦던간에 소유자의 동의는 당연히 받아야지요. 방림규석도 그것을 훼손하기 위해서 산주한테 동의를 다 받았지요. 그렇기 때문에 군유재산도 임대를 해 주었고, 또 사유림도 임대를 받았고 그것이 동의지요. 그리고 저희가 임도를 닦는데 동의라는 얘기는 그 남의 산에다 임도를 닦을려니까 이러한 규모로 훼손을 하니 좋습니까? 하고 동의를 받은다음이래야 가능 하지요.

○ [redacted] 동의를 안해주면 임도를 안닦으면 될것 아닙니까?

○ [redacted] 그렇지요.

○ [redacted] 그런데 동의를 안해주는데 억지로 임도를 닦을려고 했습니까? 저렇게 문제가 생기기 까지...,

○ [redacted] 어떤 문제말인가요?

○ [redacted] 도사리 사유지 임도 관계는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 [redacted] 동의로 인한 문제가 아니지요.

○ [redacted] 그러니까 자부담도 안한다면서요? 동의도 잘 안해준다면서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왜 임도를 닦습니까? 그 사유지에 대한 임도는 산주에게 여러가지 도움이 돌아 갑니다. 그러면 그것이 인식이 안되어서 동의도 안해주고 자부담도 안한다 하면 사유지에다 임도를 왜 닦습니까? 꼭 그래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 [redacted] 임도는 지난 군정질문때도 마찬가지로 모든 사회간접자본 확충은 바로 경제의 원동력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산림개발의 원동력은 임도인데, 임도 안닦으면 개발이 안되는 거지요. 다만 견고한 임도를 닦아라 하는 것이 위원님들 말씀이고 저도 같이 느끼는건데,

○ [redacted] 도사리 임도는 없어도 충분히 산림을 가꾸는데 문제가 없는 임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들 현

지 확인까지 가보시고 그문제를 그자리에서 지적하지 않았습니까?
그런것을 구태여 나중에 문제까지 발생될 소지를 안고 있으면서 그렇게 강행했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도대체 누구의 생각입니까? 전임자 생각입니까? 아니면 산가지고 있는 어느 특정인의 꼭 해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까? 이유가 있었을것 아닙니까? 동의를 안해줄려고 하는데 왜 임도를 닦습니까?
그문제 때문에 질의를 할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위원님 질의끝난다음 다시 질의 하겠습니다.

○ [redacted] 그다음 폭우로 인해서 훼손된 부분이 있지요? 그것은 어떤근거에 의해서 보상을 준것입니까?
진부 상월오개2리 임도시설 말입니다.

○ [redacted] 그것은 저희 임도뿐이 아니라 모든 피해에 대해서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는데, 그 임도의 피해에 따른 농작물 피해가,

○ [redacted] 알고 있는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보상을 주었습니까?

○ [redacted] 재해 어떤 보상법에 의해서 준것이 아니고 그러한 생계가 어렵고 피해를 봤으니까 어떠한 소득지원을 해줘야겠다 해서....,

○ [redacted] 그러면 금년도 산림과에서 직영한 사업입니까?

○ [redacted] 직영을 할수가 없지요. 그분이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거지요.

○ [redacted] 그다음 작년도에 군정질문한 내용입니다. 평창 상리, 미탄 가다보면 우측에 골프연습장으로 개설한 것이 있지요? 산림훼손을 했는데, 원상복구를 언제 해주겠냐 하는 군정질문을 본위원이한 기억이 나는데, 아직 원상복구가 안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요.

○ [redacted] 미처 못챙겼습니다.

○ [redacted] 산림과에서는 허가만 내주고 원상복구도 안하고...,

○ [redacted] 원상복구 하도록 명령을 냈는데 그 복구사항을 챙기지 못했습니다.

○ [redacted] 끝으로 방림 규석광산은 과장님께서 주민들하고 거의 원만히 해결이 이루어 졌다 하셨는데, 요즘 다니다 보니까 진입로도 옹벽을 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산꼭대기에

사는 김진수집까지 도로포장이 언제까지 다 하실수 있습니까?

○ [redacted]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계획중에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 [redacted] 회사 허가만 내주지 말고 그런것도 챙겨주십시요.

김진수하고 홍완표라는 사람은 부지를 회사에서 산 것입니까?

○ [redacted] 광산부지 말입니까?

○ [redacted] 진입로 말입니다.

○ [redacted]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 [redacted] 본위원이 알기로는 광산을 하게되면 그사람들 거기다 팥이나 야채같은 농산물을 심는데 여름에 농사가 안됩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허가취소를 못하겠다고 하셨는데, 허가를 해줄때는 당위성이 있으니까 물론 해주었겠습니다만. 농사가 안됩니다. 그래서 피해가 생기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redacted] 김낙운 위원입니다. 앞에서 이상훈 위원장께서 질의하신 버섯봉에 개발한 규석광산외에 관내에 유사한 광산이 여러개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산개발에 대한 건수가 3건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제가 알고있는 산림법상에 국도변 가시거리 1,000m 적용을 안받습니까?

○ [redacted] 안받습니다.

○ [redacted] 특별한 경우인가요?

○ [redacted] 공익사업이기 때문에, 광업법상 공익사업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 [redacted] 관련법을 내용만 복사해서 1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시설은 분진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같은 것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 [redacted] 필요할때는 해야합니다.

○ [redacted] 주민들이 그것때문에 민원의 소지가 있거나, 문제가 되었을때는 해야 되지요?

○ [redacted] 시설 기준이 있습니다. 환경측면에서 검토하는,

○ [redacted] 기준에 조금 미달한다 하더라도 지역주민에게 불편을 초래할때에는 의무적으로 해야하는것 아닙니까?

○ [redacted] 그것은 관계법령

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무리한 명령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redacted] 그러면 그것이 나중에 어떤 민원이 되어 집단적으로 민원이 발생하게 되었을때 부득이하게 해주는것보다는 관에서 앞장서서 그런것을 선결해주는 것이 바람직 할것 같은데, 일단 그런 관련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도의적인 측면에서 그런것이 선행되어야 할것 같습니다. 과장님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redacted] 관계부서와 협조를 해보겠습니다.

○ [redacted] 그리고 우리 관내에 이런 광산들이 주로 도로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나가다 보면 거의가 가시거리내에 있기 때문에 아주 보기가 안좋습니다. 산림을 그렇게 훼손을 해놓으면 몇백년이 가도 원상회복은 안되지 않느냐, 산림으로 회복은 불가능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푸른산을 깍아놓으면 아주 보기 흉합니다. 우리 평창군에 가장 귀중한 자원이라 하면 산림자원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산림자원을 보호도 하고, 관리도 하고, 개발도 해야되지만, 이런 어떤 미관상 좋지 않은 그런 위치에는 가급적 허가를 지양해야 할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련법규가 해당이 안된다 하더라도 그런것을 절대적으로 군에서 검토를 해서 허가를 할때 참고로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법적으로 규제할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 [redacted] 그것은 저도 똑같은 생각이거든요. 면적도 줄여야 되겠고, 또 가시구역을 벗어나야 되겠고, 똑같은 생각인데, 있던때 마다 상당히 충돌도 많이 받아오고 있는데 그것이 역부족입니다.

○ [redacted] 앞으로 그런문제는 지역주민들의 동의를 첨부하면 상당히 그런문제가 막힐것 같은데,

○ [redacted] 그런데 행정을 하다보면 주민동의를 받도록 그렇게 법령규정이 되어 있지 않는것을 다 어떤 법령개별사안에 대해서 어떤것을 붙여서 신청한다 하고 그것을 붙이면 공무원을 잡아 먹을려고 합니다. 처벌할려고 하는 민원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이것을 꼭 붙여야 겠는데, 제가 별별짓을 다했습

니다. 원주에서 어떤짓을 했나하면, 시추를 전부 채취하다 말고 해서 시추를 해라 그래서 그시추를 50m씩 시추를 해서 시추지상도를 검토해서 몇m 이내는 어떻고 해서 과연 경제가치는 몇 m 부근에 있다, 과연 캐도 경제성이 맞느냐 이것까지 검토를 해서 처리를 했는데 워낙 강하게 나오니까 되긴 되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산림청에서도 시추는 제외하고 그냥 조사보고서만 가지고 가름해라 해서 법개정을 했습니다.

○ [redacted] 이런 허가건이 들어오면 군에서 협의조정을 관련실과와 하도록 되어 있지요?

○ [redacted] 그런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 [redacted] 법적으로 문제 없으면 처리해주도록 되어 있습니까?

○ [redacted] 그렇지요.

○ [redacted] 그런것을 자체적으로 만들필요는 없습니까?

○ [redacted] 꼭 제한을 해야될것만 올려야 하거든요. 그런데, 제한해야될것을 올렸는데 우리 조정위원회에서 제한을 했다 하더라도 나중에 그것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주관부서의 부담을 줄이는것 뿐이지 법적효력이나 다른데 가서는 전혀 없거든요. 다 알고 있었다 하는것으로 지나지 않는데, 이것때문에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 [redacted] 그런문제를 우리 관내의 자원을 우리 평창군에서 보호하기 위한 보호대책으로 자체적인 조례같은 것을 재정해서 활용하면 안될까요?

○ [redacted] 물론 그런것들을 만드는데, 그것이 제삼자 민원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내부적인 문제이니까 부담을 주는것이나, 상대에게 불이익을 줄만한 조례는 법적근거에 의해서 조례자체를 만들어야 하는데, 다만 우리가 해봐야 그저 민원인을 귀찮게 하므로써 제풀에 떨어지는 그런 효과밖에는 없습니다.

○ [redacted] 저런것이 우리관의 세수증대에는 얼마나 기여를 합니까?

○ [redacted] 세수증대는 별로 많지 않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redacted] 1년에 광업소 1개소에 얼마정도의 세금을 지급합니까?

○ [redacted] 그것은 모르겠는데, 군유림의 임대의 경우는 세수가 증대가 상당히 되고 있습니다.

임대의 경우는 복구비를 복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전체에 대한 임야금액을 대부료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료를 산을다 판 값을 대부료로 받고 그 산은 계속 소유는 확보해 가지고 있는 그러한 기채상의 도움은 조금 있습니다.

○ 金樂雲 委員 별로 도움도 안되면서 훼손만 하는 과정인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대책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 山林課長 吳興一 알겠습니다.

○ 李相薰 委員 산림과장님, 금년도 산림과에서 직영한 사업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실수 있습니까?

○ 山林課長 吳興一 알겠습니다.

○ 金樂雲 委員 간벌사업 현황및 예산집행사항에 보면 93년도 보조간벌사업 현황이 나와 있는데, 제가 지난번 군정질문때 보충질문을 했던 내용이 바로 이 사업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 2,663만원의 사업이 된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현지를 한번 확인해 보셨어요? 아직까지 못가셨습니까?

○ 山林課長 吳興一 못갔습니다. 우리 계장이 다 돌아 보았습니다.

○ 金樂雲 委員 이상이 없던가요? 완전하게 처리가 되었던가요?

○ 山林課長 吳興一 네

○ 金樂雲 委員 그러면 점심시간에 저하고 계장님하고 현지확인 다시 합시다. 우리 위원님들이 원하시면 다 같이 가셔도 좋고 아니면 시간을 별도로 계장님하고 현지 확인 합시다.

○ 山林課長 吳興一 담당계장이 조사한 결과를 복명을 했는데, 미진한 부분도 있다는 얘깁니다. 그것을 보완하도록 통보를 했습니다.

○ 金樂雲 委員 언제 통보했습니까? 도로에서 보면 잘했습니다. 올라가 보면 보이지 않는 부분은 그냥 남겨 두었습니다.

○ 山林課長 吳興一 그런데 올라가셔서 그 범위는 포함이 안되있는 범위도 많을 겁니다.

○ 金樂雲 委員 아니 노란표시를 해 놓았잖아요. 그 부분은 다 범위에 들어간 임지라면서요?

○ 山林課長 吳興一 저희 필지 명세가 도면하고 다있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제가 한번 직접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金樂雲 委員 군정질의가 끝난지

몇일지났는데 아직까지 확인도 안하신것은 노력을 안하시는것 아닙니까?

○ [redacted] 시급을 요하는 사항은 아니지요.

○ [redacted] 아니요. 대게 보면 산림행정을 이런식으로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추가적으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문제는 일단 확인하는것으로 하고, 도사리 임도와 관련된 특위를 지난번에 했습니다. 그때에 현지확인도 했고 나중에 설계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초류나 쪽제비싸리를 식재하지 않은부분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때 과장님 답변은 준공처리를 11월 말에 했기 때문에 초류를 파종한것이 아직 올라오지 않아서 확인이 안된것 같다고 답변도 하셨고 지금 자료도 그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나중에 확인한 자료가 뒤에 나온것을 보면, 파종도 안했고 심지도 않았습니다. 그 쪽제비싸리 같은것은 양묘를 구하지 못해서 못심었다는 애기고, 초류종자도 종자를 확보하지 못해서 못심었다는 애깁니다. 제가 알기에는 모든 사업이 사업설계가 나오면 사업설계에 대해서 쪽제비싸리가 설계에 들어가 있다하면 미리 종묘회사하고 양묘회사하고 연결을 해서 확보를 해야 하고, 초류종자도 축협을 통하던지 어떤 채널을 통해서라도 사전에 준비가 되어서 사업착수와 동시에 이행이 되야 하는데 그런준비는 하나도 안하고 있다가 나중에 구하지 못해서 못했다면 얘기가 안됩니다.

사실 임도는 닦아놓고 특별한 일이 있기전에는 가보지 않습니다. 또 조금전에 말씀드린 간벌문제도 도로만 다니면서 보지 현지 올라가서 보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것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눈에 잘 안띠니까 대충하고 넘어가면 된다하는 이런 잘못된 사고가 아직까지 남아 있다는 애깁니다. 사실 군의회에서 각종 회의나 어떤 특위까지 열어가면서 산림행정에 대해 지적을 하고 관심을 갖는것은 지금 평창군이 다른 재원이 없지 않습니까? 산림재원밖에 없습니다. 산림재원을 잘 개발하고 보존하고 여러측면에서 산림자원을 잘 관리해야겠다는 측면에서 이렇게 관심들을 갖는겁니다.

산림과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마음에 안들어서가 아니라 우리 자원은 우리가 가꾸자는 의미에서 이렇게 관심들을 갖는

데, 이렇게 위원님들의 마음은 아랑곳 하지 않고 안일무사하게 눈가림식의 행정을 계속한다고 하는것은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번 지적을 했는데도 말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세요.

○ [redacted] 임도시설에 대한 종자묘목확보는 금년에 하자 보수를 못했다는 얘기지, 당초에 쪽제비싸리 묘목을 확보를 못해서 나무를 심지 못했다는 얘기가 아니니까 내년봄에 확실하게 실행을 하겠습니다.

○ [redacted] 지금하지 못한일을 지금당장 할수 없을테니까 앞으로 철저하게 보완을 하시되, 산림행정을 좀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철저한 감독을 해주십시요.

지금까지의 방법은 옛날방법 아닙니까? 앞으로는 이런것이 묵과가 안될것으로 알고 과장님의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redacted] 알겠습니다.

○ [redacted]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 [redacted] 위원장님 종결하지 마시고 현지확인하고 돌아온후 오후에 종결하시기 바랍니다.

○ [redacted] 알겠습니다. 그러면 12시가 지났으므로 위원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한후 오후 2시에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9분 감사중지)

(14시04분 감사계속)

○ [redacted]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계속 계속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낙운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redacted] 김낙운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간벌사업 현장확인문제 때문에 중식시간에 현지를 확인하기로 했습니다만, 과장님께서, 담당지도계장님께서 현지를 확인한결과 문제가 있는것을 시인하셨기 때문에 현지를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그 시인과정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redacted] 용평면 재산리로부터 대화면 신리까지 구간에 도로변상

에 육림작업 실행에 대해서 총 계획이 150필지에 161ha 입니다. 그 실행사항을 지난 11월 25일부터 11월 26일까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박중원 지도계장에게 지시해서 확인점검한 결과 실행이 완료된것이 136필에 139.96ha 이고, 좀 미흡해서 보완을 해야할것이 14필에 16.71ha, 아직 그당시에 착수되지 않았던것이 2필지에 5.04ha로 되어 있습니다 이결과는 즉시 도급자인 산림조합에 빠른시일내에 작업이 잘 이루워 지도록 보완지시를 한바 있습니다.

○ [illegible] 지금 과장님 답변하신 보완해야할 14필지하고 아직 시행하지 않은 2필지에 대해서 언제까지 사업을 완료해서 완료된 내용을 의회에 통보해 주실수 있는지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illegible] 이사업은 늦어도 12월 15일까지는 사업을 완료토록 하고 지금현재 미착수된 필지하고 보완을 요구해야할 필지에 대해서는 과장인 제가 직접 현지를 확인해서 완료되는대로 보고를 해 올리겠습니다.(보고서:끝에실음)

○ [illegible] 그리고 또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도사리 임도시설을 시작하게된 경위하고 과정, 동의서내용, 그리고 책정동기에 대해서 답변하실수 있겠습니까?

○ [illegible] 구체적인 사항은 서류를 세밀하게 점검해보아야 하는데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 [illegible] 언제까지 제출하겠습니까?

○ [illegible] 12월 7일까지 제출 하겠습니다.

(서면답변: 끝에실음)

○ [illegible] 그렇게 해주시고요. 도사리 임도시설에 대한 준공검사가 끝났지요?

○ [illegible] 물론입니다.

○ [illegible] 끝나고 공사비가 다 지불이 되었지요?

○ [illegible] 작년도 사업이니까 다 끝났습니다.

○ [illegible] 도사리 임도가 93년도 사업 아닙니까?

○ [illegible] 작년도 사업입니다.

○ [illegible] 올해 사업은 어디 하셨나요?

○ [illegible] 올해사업은 봉평

면에 했습니다.

○ 金榮雲 委員 앞에서 지적했던 쪽 제비싸리라던가, 초류에 대한 보식작업을 할려면 공사대금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하자보수비를 남겨 놓았나요?

○ 山林課長 吳興一 하자보수비는 별도로 없고, 하자기간동안에 성실하게 하자보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산림조합하고 했기 때문에, 그문제도 아울러서 동시에 충분이 서면으로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서면답변: 끝에실음)

○ 金榮雲委員 그러면 산림조합에서 미진한 부분을 보완하도록 되어 있나요?

○ 山林課長 吳興一 네. 이미 통보를 했습니다. 어떻게 하겠다는 통보를 다시 받아서 서면으로 필요한 사항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면답변: 끝에실음)

○ 金榮雲 委員 그러면 산림조합으로부터 보완하겠다고 하는 자료를 받아서 같이 15일까지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서면답변: 끝에실음)

○ 山林課長 吳興一 네. 그리고 조금전에 이치욱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93년도 미탄면 산지정화감시원 이상모는 실제 부르는 이름이 이태모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름의 혼선이 일어났는데, 별도의 서면제출이 필요없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 金榮雲 委員 그자료는 제가 요구를 했는데요. 팩시밀리로 읍면에서 자료를 받아서 질의한 위원님께만 드리지 말고 그런 의문은 다가지고 계시니까 위원님들께 다 나눠 주시기 바랍니다.

○ 李相勳 委員 이상훈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방림의 규석광산 문제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허가 내용을 보니까 방림산261번지에 군유림이 14,715㎡인가 되는데, 군수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군유림을 임대를 해주지 않았다면, 주민들이 그렇게 여론이 많고 반대하고 그러는데 군유림 임대는 어떤 정책에 의해서 승인해 주는 겁니까?

○ 山林課長 吳興一 임대계약은 사용목적에 타당하면 해주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농경지일경우에 농경지대부를 해주던지, 집을쓰고 있는데 대지를 임대해주던지, 광산에 필요한데 광산, 또는 도로가 필요할때 도로, 이것은 소적임대

료를 받고 임대를 해주고 있습니다.

○ [redacted] 심의위원회가 있습니까?

○ [redacted] 심의위원회는 극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처분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심의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유재산심의위원회는 행정조정위원회에서 가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조정위원회에 심의를 거쳐서 대부를 해주고 있습니다.

○ [redacted] 행정조정심의위원회라는것은 각실과소장님들이 심의위원이 되는것이지요?

○ [redacted] 그렇습니다.

○ [redacted] 그렇다고 보면 그렇게 방림면 주민들이 원치 않는 버섯봉 인허가에 대해서 실과소장들이 심의를 군유림을 임대해 주었기 때문에 다시말해서 허가가 된것입니다.

○ [redacted] 그렇습니다.

○ [redacted] 주민이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얻었는데, 과장님 주무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군유림이라는 것은 개인이 어떤 광산개발하기 위해서 군유림을 임대를 하겠다고 하는데, 심의과정에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심의를 해준겁니까?

○ [redacted] 군유림의 광산개발은 하나의 국가기관사업으로서 공익사업입니다. 예를들면 어떤 개인이 그 토지사용에 동의를 안하면 궁극적으로 토지수용평까지 적용을 할수있는 대상사업입니다. 물론 반대의 의견은 있습니다만, 여러가지 반대를 극복할수 있는 요소들이 있고 또 이것을 허가를 안해줘서는 곤란하겠다 하는 판단에 의해서, 물론 거기에는 찬성한 사람도 있을것이고, 반대한 사람도 있을것이고, 또 참여를 안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

대다수 찬성이 되었기 때문에 허가를 했습니다.

○ [redacted] 그러니까 92년 10월 28일자로 강원도지사는 채광변경허가를 해주고 당군에서는 평창군의 군유림을 행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버섯봉 광산허가를 내주었는데, 이것을 사전에 주민들이 반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줬다는 근거에 의해서 허가가 난 것인데, 앞으로 심의위원회인지, 조정위원회인지 문제가 있는것 같습니다. 다시말해서 주민을

위한 행정, 복지증진은 못할망정 반대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심의조정위원회를 불여서 허가를 해준 자체는 어떤 특혜를 준것이 아닙니까?

○ [redacted] 이것을 반대를 했기때문에...,

○ [redacted] 예를 들어서 조정위원회에서 반대를 했다면 허가가 안나는 거지요?

○ [redacted] 물론 허가가 안됩니다. 왜냐하면 조정위원회의 결정사항은...,

○ [redacted] 방금 특위위원장님하고 산림과장님하고 오랜시간동안 규석광산 허가문제가지고 여러가지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가지만 과장님께 분명한 답을 얻고자 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애기를 들어보니까 해당지역의 주민은 결사반대를 하고있고, 공익사업이니까 불가피 군유 재산까지도 심의과정을 거쳐서 조정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서 했다라고 하면, 물론 공익사업도 중요하고 또 꼭해야할 불가피한 사정이라 하더라도 주민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서 사전에 이해관계가 해소가 된후에 했어도 충분히 할수있는 여건이 되어 있었을 것이고, 또 그런과정을 걸치지 못했다 하더라도 분쟁이나 주민과 허가를 득한 업자간에 소송사건까지 분쟁이 이루워 지는 과정에서 충분히 조정위원회나 해당과에서나 누가 나서서라도 이문제는 해소가 되었어야할 사항인데, 주민의 여론을 유발시킬수 있는 군유림을 임대까지 해줘서 주민이 불편하고 또 해를 입는다고 극한 투쟁이 벌어질때까지 방치해 두었다가 지금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의 문제를....,

지금 애기를 듣고보니까 법원의 송사가 되서 주민이 패소를 해가지고 이제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딱한 처지에 놓여있는데, 주민의 입장에서 이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해결할것인가에 대한 과장님의 확실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 [redacted] 당시의 주민의 반대는 일부주민의 반대였습니다. 그리고 그 반대여론들이 다 극복이 가능한 반대여론들이였기 때문에 허가를 해준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주민들이 종전과 같은 반발은 없는것으로 생각되고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는것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주민의 직접적인 피해가 없는한은 앞으로 어떤 광산개발로 인한 새로운 문제는 야기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것이 반대하는 주민들도 그당시에 모두가 반대한것이 아니고 어떤 일부 사람들의 사주에 의해서 피치못해서 반대도 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이러한 실정에 있어서 장기화 설득하고 이해촉구하고 했습니다.

광업행위자도 자기가 돈을 벌어서 혼자 쓰지 않겠답니다. 만일 이익금이 남는다면 지역기업으로서 역할을 다하겠다는 좋은 제안도 많이 하고 만약 그것이 잘만 이루워 진다하면 그지역 경제에 상당한 보탬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 [redacted] 그런것을 알고 싶은 것이 아니라 지금 과장님 말씀은 그간의 주민들의 분쟁문제는 해소가 되었다, 그래서 광업을 하는데도 별 문제가 없이 일이 잘 진행이 된다라고 하는데, 그것은 농촌에 살고있는 주민들이 법이라면 무서워 합니다. 그런데 법원에 판사가 판결을 했는데 할말을 못하지요. 이것을 누가 해주느냐, 그다음에는 주민의 권리를 아무리 소수의견이라 하더라도 찾아줄 사람이 바로 행정책임자들 아닙니까? 누가 해줍니까? 그래서 그간의 광권을 허가받은 사람이 주민에게 조금전에 말씀하신 지역개발이라던가, 지역의 현안문제라던가, 여러가지 제시했던 그 사항이 전부 이루워 지고 주민들의 불편한 마음도 그런것으로 해서 해소가 될수 있도록 조정을 해주셔야지요. 지금까지는 소송과정까지 싸워서 업자가 이겼으니까 이젠 우리가 제시한것은 다 알바없다 하면 주민은 법에 졌으니까 할말이 없지요. 또 법이 무서우니까 항소도 못하고 그냥 있는 모양인데, 그런것을 조정해서 주민에게 불편했던 사항을 해소할수 있는 강구책을 해달라는 얘깁니다. 그렇게 할 용의가 있습니까?

○ [redacted] 알겠습니다. 그문제에 대해서는 주민편에 서서 가장 주민에게 이로운 방향으로 광업이 시행되도록 적극적으로 종재하고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 [redacted] 끝으로 과장님께 한가지만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방림규석광산 인허가에 대해 여러가지 사회적으로 물의를 야기 시켰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십시요.

○ [redacted] 이것은 행정절차상에 무슨 적법성은 차체하고 여하간 행정처분 결과로 인해서 그동안 장기간 불미러운 일이 발생했던것으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주관과장으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돌이켜보면, 이렇게 까지 문제가 야기되고 장기화될줄 알았더라면, 차라리 행정소송을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허가를 안해주었을걸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만, 그것은 다지난 일이니 지금부터 조금전에 말씀드렸던것과 같이 최대한 광업은 하되 주민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손해가 없는 방향으로 중간에서 절충해 가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 [redacted]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보충질의 없으시면,

산림과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산림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 [redacted] 민방위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redacted] 민방위과장 박준하 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시는 계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성균 민방위계장 입니다.

(민방위계장 인사)

지준철 교육훈련계장 입니다.

(교육훈련계장 인사)

주종열 병무계장 입니다.

(병무계장 인사)

민방위과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과의 기구는 민방위과장을 중심으로 민방위계, 교육훈련계, 병무계등 3개계가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정.현원은 현재 9명의 정원에 9명의 현원이 다 있습니다.

저희 소방직공무원으로서 정원에는 소방장이 1명이 책정이 되어있습니다만, 현재 소방교가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개별인원은 민방위계는 소방직2명을 포

함해서 4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교육훈련계와 병무계는 직원 각1명씩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계별 주요업무 사무분장을 말씀드리면 민방위계는 민방위계획, 비상대비업무, 소방업무를 관장하고 있으며,

교육훈련계는 민방위조직편성및 자원관리, 교육훈련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병무계는 징병검사, 징집, 소집, 병력동원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 민방위대원 현황은 지역민방위대가 183개대에 4,819명, 직장민방위대가 21개대에 1,173명, 기술지원대는 1개대에 47명, 도합 205개대에 6,039명으로 편제되어 있습니다.

그중 의무자가 5,743명, 지원자가 남자 131명, 여자165명 해서 296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의용소방대원입니다.

9개대에 30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중 남자가260명, 여자44명중 평창읍 부녀대30명, 도암면 일반대원14명입니다

향토예비군은 제1전투군과 지역전투군으로 편제되어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 소방차량 현황입니다.

평창읍, 도암면 구급차 각 1대를 해서 총 15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소방장비는 방수복이 60벌, 방수화가46조, 방수모가 65개, 공기호흡기가26개, 소방호수는 40㎜짜리가 152개, 65㎜짜리가 82개 도합 5종에 431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방용수 시설입니다.

소방용수는 저희들이 규정상 164개를 가지고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154개를 설치하므로써 10개가 부족합니다. 이것은 3개년 계획으로 보강해 나가도록끔 하겠습니다.

8페이지에 있는'93주요업무 추진실적과 10페이지에'93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민방위과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redacted] 민방위과장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redacted] 주태원 위원입니다.

몇가지 질의코자 합니다.

지금 각읍면에 의용소방대가 조직이 되어 있는데 그 의용소방대가 아닌 정규직 소방요원이 읍면에 배치되어 있습니까?

○ [redacted] 네.

○ 朱泰元委員 그사람들의 주요업무는 어떠한 업무를 분장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요.

○ 民防衛課長朴俊河 지금 면에 소방관이 배치되어 있는것은 7명입니다. 그분들의 주요업무는 운전기능에 한해 있습니다. 자동차 운전원으로 되어 있어 소방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朱泰元委員 소방차만 주요업무고 그외에 화재감시 같은것은 안하는 겁니까?

○ 民防衛課長朴俊河 그것은 본연의 기본업무이고,

○ 朱泰元委員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것은 운전기사 배치가 7명인데 그외의 소방관은 배치가 되어 있는것이 없다는 말씀이지요?

○ 民防衛課長朴俊河 네.

○ 朱泰元委員 그럼 그사람들이 본연의 업무가 소방차 운전하는 운전기사만으로 끝난것인지, 그외의 다른업무를 관장하고 있는지 설명하여 주십시요.

○ 民防衛課長朴俊河 주 업무는 운전하고 그다음에 화재예방감시까지도 겸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화재가 났을 때는 출동해서 진화작업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朱泰元委員 그래서 운전기사 그사람들이 야간근무도 해야하지요? 24시간 근무를 하는 겁니까?

○ 民防衛課長朴俊河 복무시간은 24시간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사람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떤곳은 집에 불일이 있다 하면 공간이 있지않나 이렇게 봅니다.

○ 朱泰元委員 잠은 언제 잡니까?

○ 民防衛課長朴俊河 숙직을, 항시 대기하면서 전화기를 놓고 있기 때문에,

○ 朱泰元委員 각읍면에 의용소방대에 정규직 소방관이 1사람씩 가지고는 도저히 주요업무를 담당하기에는 불가능하다는것은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 朱泰元委員 이런사항을 앞으로 어떻게 조치할것인지 그 안을 말씀해 주십시요.

○ 民防衛課長朴俊河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도에 도에다 건의를 했었습니다. 앞으로 소방관은 읍면에 있는 기능직을 소방관으로 교체를 하는방향하고, 다음에 소방차 운전기사 1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2사람으로 주겠다 해서 지금 평창

읍의 구급차가 7월달에 와서 11월 1일자로 직원이 2명이 배치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내무부 정원승인도 있고 해서 지금 중앙에서 고려를 하고있는 것으로 압니다.

○ [illegible] 과장님 말씀은 좋은데요. 비단 과장님뿐만 아닙니다.
여러 행정책임을 맡고계시는 본군의 과장님들 다 그런말씀을 하시는데, 대체적으로 건의는 했습니다. 이것으로 끝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와같이 현실적으로 불가피한것은, 각면에 소방관 정규직 1사람이 가서 소방차운전해야 하고 화재감시해야하고 24시간 근무를 한다라고 하면 이것은 도저히 누가봐도 불가능한것은 빨리 시정이 되야 하지요. 그런데 대략적인 공직자들이 상급기관에 건의한것으로 내책임은 다했다 하고 안일하게 생각합니다. 건의가 되었으면 관철이 되도록 어떤 조치가 되야 하는데 건의로 끝나서는 안되지요.
시급한것이고, 한사람이 업무를 감당하지 못할것을 많은량의 업무량을 주고, 그러니까 그사람이 될테면 되고 말테면 말라고, 근무의욕도 없고 하니까 아침에 집에서 늦게 출근을 해서 출근부에 도장이나 찍고 또 정위치에 있지도 않고 어떤사람들은 근무도 안하는 거예요.
화재감시차라 해서 다방도 가고, 배고프면 먹으로가고 왔다갔다 하다가....,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감당할수 없는 처지니까, 아무리 노력을 해봐도 할수 없는거니까, 아무때나 잘못되었다고 지적이 되면 시말서를 쓰는 한이 있더라도 의욕을 상실하는 겁니다.
이것은 건의로 끝날것이 아니라 꼭 관철이 될수 있도록 하셔야지, 대개보면 건의로 책임의 한계성을 피할려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꼭 관철이 될수 있도록 조치가 되야 합니다.
어떻게 1사람이 1개읍면을 맡아서 화재감시하고 24시간 근무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요.

○ [illegible] 좋은 지적입니다.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만, 저희가 건의를 해서 최대한 빨리 이루워 지도록 끔, 저희가 일전에도 전화를 하니까 전국적인 소관이기 때문에 내무부에서 일괄적으로 검토중에 있다는 전화 답변까지 받았습니다. 더 독촉을 해서 빠른 시일내에 이루워 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金樂雲 委員 김낙운 위원입니다. 소방관 정규직이 7명이라고 답변하셨는데 어떻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까?
각 면별로 1명씩 다 배치가 되어 있습니까?

○ 民防衛課長 朴俊河 도암에 3명, 평창에1명인데 이번에 온것까지 하면 3명이 되겠습니다.
진부에1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金樂雲 委員 그런데 소방관이 있는곳은 3명씩 있고 없는곳은 1명도 없습니까?

○ 民防衛課長 朴俊河 당초의 소방시설물을 봐서 인원배치가 되어 있는데, 지금 그분들의 생활연고가 그렇고 해서 그렇게 배치가 되었습니다.

○ 金樂雲 委員 얘기가 안됩니다. 소방관이 7명이면 골고루 배치해서 그사람들이 각 읍면에 소방관으로서 역활을 해줘야지 있는곳은 3명이나 있고 없는곳은 1명도 없다는 얘기는...,
당초에 소방서가 있고 장비가 있는곳에 배치를 했으면 나중에 각 지역별로 장비가 보급이 되면 그분들을 그쪽으로 이주를 시켜서라도 없는지역을 보충을 해주셔야 하잖아요. 지금 이문제 때문에 상당히 여론이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이것이 개선이 되야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이것은 도저히 얘기가 않되는 얘깁니다. 어떻게 앞으로 방법을 강구하실수 있겠습니까?
거주지 관계는 명령만 하면 그리로 옮겨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주지야 가서 구입을 하고 장만하면 되는거지 그것은 이유가 안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民防衛課長 朴俊河 이것을 임용권자가 도에다 건의를 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 金樂雲 委員 검토가 아니라 과장님이 책임지시고 이문제를 해결하셔야 됩니다. 앞에서 주태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도에다 이런얘기가 나올때마다 한번 건의하고 마는 형식이지 이것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시는가 말입니다. 대부분 많은 분들이 그런 자세입니다. 뭔가 할려고 했으면 적극성을 가지고 최대한의 노력을 하는 부분이 보여야 되는데, 그런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할려고 하는데 안되겠습니까? 노력을 안하니까 안되는 것이지, 이것은 과장님 약속하세요

언제까지 관철시키겠다고, 뚜렷한 이유도 없는것 같습니다.

○ [redacted] 물론 공무원이 발령이 나면 옮겨야 하겠지요.

언제까지 꼭 하겠다는 답변은 이해를 해주시고 빠른시일내에 조정이 되도록끔 조치를 하겠습니다.

○ [redacted] 이것은 도지사가 발령을 냅니까?

○ [redacted] 네. 저희들 소방관은 전부다 도지사 발령입니다.

○ [redacted] 그렇드라도 도지사는 이런 형편을 잘 모를것 아닙니까?

○ [redacted] 물론 그렇습니다.

○ [redacted] 그럼 이런실정을 군에서 빨리 챙겨서 개선이 되도록..., 올리면 도지사야 내용이 타당하면 인정하는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과장님이 책임지고 최대한으로 빨리 개선이 되도록 하시고, 그리고 소방관이 각 읍면별로 1명씩은 있어야 합니다. 그것도 빨리 개선이 되야 합니다 그리고 기사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구급차가 평창읍에 1대있고 도암면에 1대 있는데, 구급차는 평창읍에만 사용하라는것도 아니고, 도암면에만 사용하라는 것도 아닐겁니다.

어느 면에서든 화재가 나면 구급차는 달려가야 합니다. 그렇지요?

○ [redacted] 네.

○ [redacted] 그래서 평창읍에 있는 구급차는 이쪽의 4개읍면을 담당하고 도암면에 있는 구급차는 저쪽에 있는 4개면을 담당할수 있도록, 화재만 나면 구급차는 달려가도록 조치가 되었겠지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 [redacted] 그런 규정은 읍면에 시달해 내려가 있습니다.

○ [redacted] 그리고 1가정 1소화기 갖기 실적이, 가정은 49가구만 소화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상당히 미흡한데, 지금 소화기문제는, 차량도 소화기를 구비하고 있고 중요한 시설에는 소화기를 다 배치하는데, 화재초동 진압을 위해서는 소화기 역활이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각 가정별로 소화기를 꼭 구비할수 있도록 과장님이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고, 소화기를 구입해놓고 사용을 못하는 사람도 많거든요. 사용할수 있는 방법도 민방위 훈련이라던가, 또 반상회라던가, 여러가

지 채널을 통해서 교육이 빨리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소화기 관계는 앞으로 계획이 있으십니까?

○ [redacted] 여기에 소화기 판매소가 없기 때문에 금년봄에 평창읍 연쇄점과 절충해서 갖다놓고 판매하고 있습니다.

○ [redacted] 개당 얼마나 갑니까?

○ [redacted] 24,000원 입니다.

○ [redacted] 비싸지 않은데요.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구입할수 있는데, 관에서 노력하는 여하에 따라서 실적이 빨리 올라가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말씀 드리고, 그다음 농어민후계자 병력특례제도가 지금 시행중에 있는데, 우리관내에서 이런 병력특례를 받은 후계자가 있습니까?

○ [redacted] 그것은 지금 읍면에 지시를 해서 신청이 있으면 하라고 시달되어 있습니다.

○ [redacted] 아직까지 실적은 없습니까?

○ [redacted] 네.

○ [redacted] 대상자는 많이 있으리라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실적이 없네요.

○ [redacted] 신청이 들어오는 읍면이 없습니다.

○ [redacted] 홍보가 덜되어서 그런것이 아닙니까?

○ [redacted] 물론 그런차원도 있겠지만, 홍보를 해서 있으면 빨리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redacted]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redacted] 김종영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김낙운 위원께서 질의을 하시는데, 평창군내에 소방관이 7명이라고 하셨지요?

○ [redacted] 네.

○ [redacted] 그러면 평창읍에3명 도암에 3명, 진부에 1명 그렇게 7명입니까? 그렇게 말씀 하셨지요?

○ [redacted] 네.

○ [redacted] 그런데 소방관이 그렇지 않은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도암에 소방관이 1명, 평창에1명 그렇지 않습니까? 밑에있는 2명은 기사입니까?

○ [redacted] 기능직입니다.

○ [redacted] 기능직인데 과장님

소방관이 7명이라고 하셨잖아요?

○ [redacted] 도암에 3명이 다 소방관입니다. 운전한다고 기능직으로 보시는데 소방경으로 임명이 되었습니다.

○ [redacted] 도암으로 말하면 이상욱씨가 소방관이고 밑에있는 2명은 자동차 기사 기능직으로 있는것이 아닙니까?

○ [redacted] 아닙니다.

○ [redacted] 보직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 [redacted] 운전직인데 소방관입니다. 계급의 차이가 나서 그러는데, 소방관으로 임명이 나 있습니다.

○ [redacted] 소방관은 별도로 사무실이 설치되 있을때 소방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 [redacted] 소방관 사무실이 별도로 있는것이 아니라 그사람들이 임명을 소방직으로 임명을 받습니다. 발령장에 예를들어 소방교면 교, 그다음에 소방장이면 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redacted] 타면에 있는 소방직 공무원은 뭐라고 합니까?

○ [redacted] 그것은 군수가 임명한 기능직입니다.

○ [redacted] 그런데 이해가 안갑니다. 소방관이 1개면에 있으면 관이 1명이지 3명이 있는데 전부다 소방관이라고...,

○ [redacted] 우리가 편의상 부르기에 소방관이라고 하는데, 그분들도 소방직으로서 소방교가 있고 소방장이 있는것처럼 계급이 있습니다.

○ [redacted] 계급이 있으면 1사람은 잎이 2개면 소방관일것이고, 잎이 1개면 소방직일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 [redacted] 아니 계급이 어떻게 되어 있나 하면 경찰처럼 잎이3개면 소방장, 다음에 소방교, 다음밑은 소방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암에는 이상욱씨가 소방교이고 다음에 소방사로써 2명 백승현 하고 박용원입니다.

○ [redacted] 소방관하고 기능직하고 보수의 차이가 많이 납니까?

○ [redacted] 그런 차이가 크게 안납니다.
몇만원 차이는 있을겁니다.

○ [redacted] 지금 기능직으로 있는사람들이 읍면별로 소방관이 1명씩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읍면별로 소방관 T.O 를 하나씩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어떤 사기문제인데 누구는 소방관으로 있으면서 종사하고 있고, 기능직으로 종사하고 있고 해서 그사람들 나름대로 어떤 평가기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사기저하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능직들을 특별하게 예우에 차이가 없다면 소방관으로 임명할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 [redacted] 책임감도 기능직보다 소방관으로 있으면 더 있을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검토중에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redacted] 방범비상벨 설치 270대라고 나와 있는데, 일반취약지하고, 비지정관광지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지금현재 어떻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 [redacted] 2가구내지 3가구를 1개조로 해서 서로 연결되도록끔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 [redacted] 관광지는 어디입니까

○ [redacted] 관광지는 저희들이 비지정관광지 초소에 할려고 하니까 상당히 거리가 먼곳도 있고 해서 이장집을 중심으로 해서 비지정관광지에 가까운 마을단위로 해서 2가구내지 3가구로 해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 [redacted] 현지 관광지 초소에는 안되어 있지요?

○ [redacted] 그것이 상당히 거리가 멀기 때문에 관리가 상당히 어려울것 같습니다. 저희도 초소에다 할려고 몇번 시도를 했습니다만, 사실 어려운점이 있어서 관광지에 가까운, 제일 인접한 가구끼리 서로 연결하도록 그렇게 설치했습니다.

○ [redacted] 알겠습니다.

○ [redacted] 박용태 위원입니다. 1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평창군은 타군에 비해서 소방차가 각면단위 다 배치가 잘되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지금 날로 고층건물이 자꾸 늘어나고 있는데 우리 평창군관내에도 고층건물의 화재예방을 위해서 고가사다리차 같은것을 구입할수 없는지 그것을 도에다 건의해서 1대정도 구입할 수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 [redacted] 저희들 나름대로 상당히 노력하였습니다.

현재는 당장 도 재원은 조금 어렵고 강원도에도 고가 사다리차가 3대가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어렵게 되어 저희들이 17일날 횡계리조트에서 광역소방훈련을 실시 했습니다.

강릉소방서 고가사다리차 까지 불러서 했습니다.

부군수님과 함께 리조트 이사장에게 이 지역에서 이것하나 해달라고 해서 약 80% 지금 검토가 되어 있습니다.

회장님이 돌아오시면 보고를 해서 되도록 해주겠다고 약속까지 받아놓고 있습니다.

○ [redacted]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redacted]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아무소리가 없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계시면 민방위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민방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58분 감사중지)

(15시08분 감사계속)

○ [redacted]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 합니다.

보건의료원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redacted] 보건의료원장 이기로 입니다.

보고에앞서 저와함께 일하고 있는 과장,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임영빈 보건사업과장 입니다.

(보건사업과장 인사)

정장용 보건행정계장 입니다.

(보건행정계장 인사)

최진순 가족보건계장 입니다.

(가족보건계장 인사)

정종환 예방의약계장 입니다.

(예방의약계장 인사)

신경선 원무계장 입니다.

(원무계장 인사)

이어서 보건의료원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보건의료

원 운영현황, 그리고 사업추진 현황입니다.

각계별 사무분장을 간단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계에서는 원내직원 인사및 당직근무수령, 직원의 복무단속, 그리고 예산운영과, 보건진료소 지소에 대한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가족보건계에서는 모자보건및 가족계획사업추진과 영유아 관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방의약계에서는 방역대책을 수립하고 전염병예방접종및 급만성 전염병환자관리에 치중을 하면서 의료법, 약사법에 의한 등록신고처리및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원무계에서는 환자 입,퇴원과 진료비 수가징수, 보험료청구및 그외시설 장비물품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외 일반진료부서에서는 환자관리에 주로 임하고 있습니다.

보건의료원은 1989년 전국민의료보험실시에 따라서 종합병원이 없는 전국15개소 군보건소에 진료기능을 강화하여서 병원화 보건소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료원은 약30병상의 입원환자를 관리할수 있도록 지하1층, 지상3층의 건물을 갖추고 있으며, 보건사업과 외에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과,치과의 외래를 갖고 응급실 운영을 주야로 하고 있습니다.

보건의료원 인력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1993년 12월 1일자로 읍면에 근무하던 보건요원과 보건지소에서 근무하면 진료보조원 치과위생사들이 보건의료원 정원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유인물과 차이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저희 보건의료원 전체 인원은 91명 정원입니다. 그외에 공중보건의사가 국가직,전문직으로서 의료원8명, 보건지소에 13명, 총21명이 함께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의료원 내에서는 정원47명으로서, 보건사업과 15명과, 진료부33명이 근무를 하고 있지만, 현재 결원은 6명입니다.

이결원은 보건7급직 2명, 8급직2명, 약사1명, 기능직1명입니다.

그외 하부조직인 보건지소에는 의사1명과 치과의사1명, 진료보조원2명, 보건요원2명이 근무하게 되어 있으며, 7개소의

요원 28명과 공중보건의사 13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대화보건지소에는 치과의사가 없습니다.

보건진료소는 16개소로서 별정직6-7급 1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외 보건의료원 운영현황과 사업추진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redacted] 보건의료원장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의료원장님이 답변이 어려운사항을 보건사업과장님께서 답변하여도 좋습니다.

○ [redacted] 알겠습니다.

○ [redacted] 각면 지소중에 저희 대화같은 경우는 가보면 환자진료를 하는데, 주사실이 따로 없습니까?

○ [redacted] 일반적으로 보건지소는 농촌형, 도시형, 중도시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형에는 어떤규모로 설치되어 있고, 중도시에는 어떤 규모로 설치되어 있고, 우리...,

○ [redacted] 왜 그러는가 하면 외사가 처방을 해주면 가서 주사를 맞으라고 하는데, 주사를 맞으려면 접수실에서 주사를 놓는데, 여직원들이 같이있는데 들어가서 주사를 맞습니다.

주사실이 따로 있는줄 알았는데, 명색이 병원인데, 주사실이 따로 없고, 사무실에서 주사를 놓는가 생각이 들어 의심이 가서 물어본 것입니다.

○ [redacted] 우리가 농촌형으로 군수가 마음대로 짓는것이 아니고 지소에는 별도의 투약실이라던지, 보건의료원처럼 주사실이 별도로 구별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건물이 협소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것이 문제가 될 염려가 있다면 현재의 장소로서는 도저히 주사실을 별도로 만들수 없습니다. 다만 의사의 진료실 안에서 커텐으로 스크린을 해놓고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강구하겠습니다.

○ [redacted] 그렇게라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실에 들어가면 여직원들 주루룩 앉았는데 옷을 벗고 주사를 맞는다는것이 보기가 쑥스러우니 조치를 해주십시요. 이상입니다.

○ [redacted] 김낙운 위원입니다. 제시하신자료 마지막 페이지를 보면예방접종 예산집행 현황이 나와 있는데, B형

간염 무료접종실적이 예산은 639만2천원인데 111만7천원만 무료로 예방접종을 한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실적이 저조한 이유가 뭔지 그문제하고 그다음 유료로 접종하는 실적도 보면 예산액은 6,524만8천원인데 실적은1,825만8천원밖에 안되 있습니다.

유료예방접종도 예산에 비해서 실적이 아주 저조하고 B형간염 무료접종도 상당히 저조한 이유가 어디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redacted] 무료접종은 총12,500명인데 B형간염이 그중 가장 실적이 저조합니다. B형간염은 6세 미만과 신생아에게 접종하는 접종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우리가 접종을 해왔습니다. 간염은 1회에 접종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1차, 1달후에 2차, 그다음 5년후에 마지막3차 이렇게 맞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예방접종 대상자가 실적은 무료로 내려왔습니다만, 그런대상자가 감소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redacted] 대상자가 줄은 것입니까?

○ [redacted] 네.

○ [redacted] 농촌에 아동이 없다는 얘기군요. 그것때문에 원인이...,

○ [redacted] 네.

○ [redacted] 그럼 명년도에는 그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줄여서 잡으셔야겠네요.

○ [redacted] 유료접종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료와 무료가 구분된것은 무료는 영세민 저소득층에 대해서만 놓아 주고, 그외 유료접종은 돈이 있는분들은, 여기보면 새로개발된 백신이 굉장히 비쌉니다. 이것은 정부에서 다 일괄적으로 무료로 접종해줄수 없으니까 목표를 잡아서 어느선까지는 유도해라 해서 각 병.의원에서 자비로 접종하는것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중에서도 유료에 1차적으로 우리만 하는것이 아니라 전통계를, 평창군에 있는 각의료기관에서 놓은것을 목표로 해서 실천한 숫자입니다.

○ [redacted] 몇일전에 에이즈날이 지나간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내에는 에이즈로 판명된 환자가 있습니까?

○ [redacted] 없습니다. 이건 보사부에서만 관리를 하게 되어 있고 여기서 가검물을 채취를 합니다. 어떤 특정한 업소에 종사하는 접대부라

라던지, 이런것에 대해서는 성병에 대해서 6개항이 있습니다만, 그중에서 에이즈까지하면 7개항에 들어갑니다.
임질,매독등 여러가지해서 6개항목에 마지막에 에이즈가 세계적으로 유명하기 때문에 들어가 있는데, 가검물은 올라가고 있습니다만, 보사부에서 이것을 만들어서 특별관리하기 때문에 우리강원도 내에서도 몇명 안되고 있습니다.
평창군 같은곳에서는 생각지도 못할 상태에 있습니다.

○ [redacted] 다른 성병은 어떻습니까?

○ [redacted] 제일 많은 것이 임질입니다. 전체의 0.3%~ 0.4%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 [redacted] 대략 확인된것은 몇건정도 되지요?

○ [redacted] 전체 한것은 안나왔습니다만, 0.3%~0.4%로 되있습니다.

○ [redacted] 0.3%라는것은 무엇을 대비하는 겁니까?

○ [redacted] 전체의 검진수에다 감염된자수 입니다.

○ [redacted] 집계가 있을것 아닙니까?

○ [redacted] 네. 있습니다.

○ [redacted] 그외는 없습니까?

○ [redacted] 그외에는 0.01% 정도가 매독등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여기서 감염된것이 아니고 벌써부터 기록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를들어 서울서 병에 걸렸던 사람이 치료를 받았다 하더라도 일단은 다른곳에 가면 항상 데이타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것으로 봐서 0.01%정도 나온다고 보고 있습니다.

○ [redacted] 유흥업소에 종사하는 사람들에 대한 위생검사는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까?

○ [redacted] 위생검사는 보건의료원소관이 아니고 사회과소관 입니다.

○ [redacted] 사회과 소관이라도 의료원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 [redacted] 우리가 검진만 하지 위생검사는 하지 않습니다. 접객업소 종사자의 검진만 하는데 양성이 되면,

○ [redacted] 검진은 철저하게 되

고 있지요?

○ [redacted] 네.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월 2회 하고 있습니다.

○ [redacted] 한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의료원의 이용환자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거리도 멀고 여러가지 홍보문제도 있고 또, 의료의 질적인문제등 해서 이용객들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근간에 와서는 여러가지 보완도 되고 또 전문의들께서 열심히 해주시고 해서 계속 진료환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아직까지 환자들을 대하는 써비스 문제가 문제시 되고 있습니다.

병원을 찾는사람들이 건강한 사람은 거의 없겠습니다만, 건강치 못한사람들이 찾으면 따뜻하게 대해주셔야 하는데 그런것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어떤 기술적인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일단 갔을때 따뜻한 그런것을 느꼈을때 환자들이 더 친근감을 가지고 찾을수가 있는데 그런것을 못느낀다, 모두가 직업의식에만 젖어있는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들을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것 같아서 오늘 이렇게 감사하는 과정에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모든 종사하시는 분들께서 이부분에 관심을 가지시고 찾으시는 환자들을 따뜻하게 대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redacted] 열심히 하겠습니다.

○ [redacted] 김종영 위원입니다.

지금 질의한 내용중에서 궁금한점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방접종 예산집행현황을 질의를 해서 잘들었습니다만, 지금 일본뇌염하고, 렙토스피라증하고, 장티프스하고 인플랜자 하고 이것이 우리 관내에서 발생된 지역하고 또 연령별로 어떤 연령에서 많이 발생이 되었는지 답변해 주십시요.

○ [redacted] 발생된 환자수는 없습니다.

○ [redacted]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본뇌염은 주로 소아가 많이 걸리는 질환인데, 아직 저희들한테 보고된것은 없습니다.

렙토스피라증은 보통 농사를 짓는사람들의 연령에서는 누구나 걸릴수 있는 가능성은 있지만, 저희지역에는 얼마전 미란

에서 중학생이 하나 발견이 되었습니다.
원주 기독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이후에 와서 연락이 되어 저희들이 알고있는 하나가 있고,
유행성출혈열은 올해는 없습니다.
장티프스도 물론 없습니다.
장티프스와 비슷한 파라티프스 질환은 여러사람이 있었습니다.
장티프스는 없었습니다.

○ [redacted] 그러면 예산하고 실적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치료라던가 신고된 내용이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예산과 실적이 있는데 실적은 어떻게 된 사항입니까?

○ [redacted] 예방한 실적입니다.

○ [redacted] 알겠습니다.

○ [redacted] 방역소독중 우물소독이 목표의 80회인데 실적이 114회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 평창군에 우물이 몇개나 있습니까?

○ [redacted] 우물은 지금 사회과에서 숫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 [redacted] 그런데 자료에 80회가 목표인데 114회를 소독했다고 사업계획서에 나왔는데, 우리 평창군에 과연 우물이 몇개나 있나요?

○ [redacted] 여기서 우물이라는것은 계곡 자연수를 얘기한 겁니다.

○ [redacted] 우물이라는것은 예전에 두레박으로 먹던것이 우물이지 시내로 흘러가는것이 어떻게 우물이 됩니까?

○ [redacted] 우리가 사업을 할때는 우물로 봅니다. 자연수라던지...,

○ [redacted] 말도 안되는 얘기지요. 우물이라면 두레박으로 퍼먹는것을 우물이라고 하잖아요?

○ [redacted] 우물로 보지요. 그러나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들어서 공동정호 이러면 우물입니다 말씀하신대로 두레박으로 퍼먹는것을 공동정호라 하고, 여기서 얘기하는것은 샘물 이런것을 다 우물로 봅니다.

○ [redacted] 알겠습니다.
그런데 93년도에 의료원에서 영안실을 개원했다가 예산부족으로 못하고 있는줄 알고 있는데, 앞으로 영안실 추진계획을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요.

추진계획은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때고 예산만 확보되면 할려고 합니다.

○ [redacted] 부지선정이라던가, 추진현황에 대해서 어디까지나 왔는지 말씀해 주십시요.

○ [redacted] 올해 짓기 위해서 보건사업과장님께서 설계문제하고 부지는 어디다 정했나 하면 의료원 뒷쪽에 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다른 공공토지가 있는지 물색을 하다가 마땅한 장소가 없고 병원근처에 있는것이 좋겠다 해서 건물뒤쪽을 일부 밀어서 그곳에 선정을 했었습니다.

○ [redacted] 그럼 부지매입을 안해도 되는 거지요?

○ [redacted] 네.
현재까지 진행된 상태로서는 그렇습니다

○ [redacted] 이상입니다.

○ [redacted] 곽문춘 위원께서 질의하신 영안실문제는 당초 올해 계획을 하셨다가 예산이 부족해서 광장포장을 하는것으로 예산을 돌리시고 다음기회에 하시겠다고 이렇게 계획이 된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명년도에 예산이 확보가 되셨습니까?

○ [redacted] 올해 예산이 삭감이 되는문제로 평창군에서 중장기 개발계획이라는 것이 편성이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영안실 짓는 문제도 그쪽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 예산이 굉장히 적다는 얘기를 듣고 사업에서 빠졌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들이 못 올렸습니다.

○ [redacted] 알겠습니다. 그러시고 각 오지부락으로 보건지소가 배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를 이용하는 환자들은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까?

○ [redacted]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지소나 진료소는 자체운영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소의 1일 환자가 10명내지 15명만 되면 예산에 별 어려움이 없이 운영이 될텐데, 방림이나 봉평의 경우에는 오히려 적자가 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 두지역을 제외하고는 어느정도 예산을 충족한 상태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것으로 봐서 환자가 이용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redacted] 1년에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를 이용하는 환자수는 대략 얼

마나 집계가 되었습니까?

○ [redacted]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서면답변 - 끝에 실음)

○ [redacted]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아무소리가 없음)

보충질의 없으시면 보건의료원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료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 [redacted] 농촌지도소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redacted] 농촌지도소장 유재국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같이 일하고 있는 과장과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지도과 전근택 과장 입니다.

(사회지도과장 인사)

기술보급과 이우형 과장 입니다.

(기술보급과장 인사)

지도기획계 이상필 계장 입니다.

(지도기획계장 인사)

교육공보계 김옥기 계장 입니다.

(교육공보계장 인사)

사회개발계 백순규 계장 입니다.

(사회개발계장 인사)

생활개선계 황혜영 계장 입니다.

(생활개선계장 인사)

식량작물계 조병옥 계장 입니다.

(식량작물계장 인사)

경제작물계 이범균 계장 입니다.

(경제작물계장 인사)

축산계 박봉훈 계장 입니다.

(축산계장 인사)

농업경영계 조규명 계장입니다.

(농업경영계장 인사)

이상 직원소개를 마치고 보고순서를 말씀드리면, 첫째 일반현황, 두번째 94년도 주요사업계획으로는 지역농업개발센타육성, 건강사랑방설치, 1읍면1특산작목개발, 폐광을 이용한 여름느타리재배, 톱밥발효사료 급여로 고품질 계란생산, 단경기 과채류 비가림재배, 농산물품질인증 작목개발, 양질쌀 생산을 위한 논오리 사육, 방목초지 토종닭 방사시험, 대추나무 빗자루병 방제, 야생화증식포

재배시험, 임간산지 산채재배등 12개 사업을 계획추진하겠으며

세번째로 행정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지도소 기구및 인력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촌지도소는 사회지도과, 기술보급과등 2개과로 되어 있고 사회지도과는 지도기획계, 교육공보계, 사회개발계, 생활개선계등 4개계로 되어 있습니다.

기술보급과는 식량작물계, 경제작물계, 축산계, 농업경영계등 4개계로 모두 8개계로 편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년주기로 별도 1-2개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지역농업개발시범지역 1개소를 선정 주재 지도사를 배치 지도하고 있고, 읍면은 농민상담소5개소, 지구지소1개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원현황을 말씀드리면, 지도관3명, 농촌지도사31명, 생활지도사4명, 지방직6명등 44명으로 현재는 지도사3명, 지방직1명등 4명이 결원인 상태입니다.

담당업무를 말씀드리면 사회지도과에서는 농촌지도사업종합계획수립 조정및 실시, 지도공무원자질향상및 특기별지도인력관리, 농촌지도자육성및활동지원, 농민훈련의 실행계획, 작목별영농기술교육겨울농민교육, 농기계기술교육, 기술공급활동 계획의 수립 실천, V.T.R 스라이드등 시청각교재제작활용, 농외소득원개발지도, 4-H회육성지도, 농민후계자육성및사후관리지도, 지역사회개발사업및 운영지도, 농촌영양개선지도, 농촌주거환경개선지도, 농민건강관리지도, 부녀자학습조직과제지도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기술보급과에서는 식량작물 우량품종보급및 시범사업설치운영, 농업기상측및 농작물병해충기본예찰활용, 토양검정및 시비개선지도, 채소 과수 화훼재배 기술지도, 특용작물재배기술지도, 경제작물분야시범사업및 주산단지 지도, 가축사양관리지도, 사료작물재배기술지도, 농산물가공기술지도, 양잠기술지도, 가축질병진단실시운영, 농업경영개선지도, 농산물가격정보수집및분산등을 기술보급과에서는 관장 지도하고 있습니다.

지구지소및 농민상담소 주재지역에서는 농민래방및 전화상담, 농민학습단체조직육성, 마을현지순회방문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적 현황을 보고드리고 94년도 업무보고와 정기행정감사 보고는

제출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소관 과장들이 소상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redacted] 지도소장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도소장님께서 방금 일반현황을 말씀해 주셨는데 유인물에 내용이 없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redacted] 곽문춘 위원입니다. 6페이지에 보면 양질쌀 생산을 위한 논오리 사육 사업비 12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요.

○ [redacted] 기술보급과장입니다.

양질쌀 생산을 위한 논오리사육이라 하는것은 쉽게 얘기해서 농약이나 제초제 같은것을 쓰지 않으면서 어떠한 오지쪽으로 논오리를 사육하게 되면 거기서 논오리가 풀을 뜯어먹고 또 충도 잡아 먹습니다. 그래서 논오리 사육을 해볼까 하고 94년도에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 [redacted] 연구를 해서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 [redacted] 우리 군에서는 없습니다. 시험성적에는 나와 있고요. 그다음 이사업은 그지역이면 어느 지역이고 일괄해서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상당한 효과가 있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 [redacted] 내년도 사업계획이지요?

○ [redacted] 사업계획입니다.

○ [redacted] 생소한 것이라서 논오리사육을 해서 양질의 쌀을 생산하겠는지 이해가 도저히 안가서 제가 질의했습니다.

○ [redacted] 모를 이양한 논에다 논오리를 사육하게 되면 거기서 나는 충은 논오리가 잡아먹고 또 풀도 뜯어먹고 그러니까 농약을 덜치니까 저공해지요. 또 논오리가 배설하는 배설물은 유기질이 되지요.

○ [redacted] 알겠습니다. 내년도 사업이라니까 잘되도록 빌겠습니다. 내년도에 이자리에서 서로가 좋은 효과가 나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 [redacted] 김낙운 위원입니다.

올해도 여러가지 시범사업을 많이 하셨고 내년에도 많은 사업을 계획을 하셨는데, 이러한 시범사업들이 시범사업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 하는 여론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시범사업을 하신 분들이 연말쯤에 한자리에 모이고 또 관심있는 사람들도 같이 한자리에 모여서 평가회를 하고 또 평가회에서 얻어지는 결과를 참석했던 사람들이나 주변에 많은사람들 한테 홍보를 해서 많이 확산이 되야 시범사업으로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기회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까지 평가회는 어떻게 해오셨는지 또 앞으로 평가회를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방법을 한번 고려해 보실 생각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redacted]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는 그지역, 시범지역 인근농가와 같이 평가회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미흡하다고 하는것은 시범사업에 뜻있는 전 우리군 농민을 대상으로해서 평가회를 가져야 되겠다고 우리 자체로 그렇게 생각되고 명년도부터는 그런 종합평가회를 가질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방법으로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는 시범사업가운데 톱밥발효 우사를 하나 설립해서 지금 하고계신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성과나 분석하신 내용을 우리가 담당하신 계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 드리고 싶습니다.

○ [redacted] 먼저 톱밥발효사 설치시범사업에 대한 현황을 말씀드리면 위치는 평창읍 종부2리 함영권 농가입니다.
설치규모는 계획은 50평 1동을 하기로 했는데, 금년 실적은 60평을 설치했습니다. 공사는 4월 1일부터 시작해서 6월 30일날 완공했습니다.
설치내용은 개방식 우사 형식으로 지어서 운동장을 60평정도 첨가해서 설치했습니다.
톱밥을 30cm 진층을 하고 발효제 싸나균을 사용했습니다.
소요예산은 농가자부담 950만원하고, 도비 300만원, 군비300만원 합계 1,55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여기서 시범사업 성과를 말씀드리면, 그 농가로부터 증빙하는 이야기는 우사관리 노동력이 10분의 1도 안든다고 하지만

저희들이 볼때는 한 65% 절감이 되는것으로 계산이 나왔습니다.

예를들면 30두 1일관리 시간이 120분 소요했었는데, 톱밥우사를한 이후에는 30두 1일관리시간이 40분 소요된것으로 계산이 나왔습니다.

비육우, 육성우 증체효과가 있었는데, 이것은 메어 놓고 기르던 소를 개방식 우사에서 풀어놓고 기르는 관계로 자연히 생리효과가 좋아져서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만, 메어놓고 사육하는것보다 12% 이상의 증체효과가 나지 않나 이렇게 계산이 되었습니다.

1일 비육 증체량을 보면 1일에 0.83kg정도 비육이 되던것이 개방식 우사에서 기른결과 0.93kg의 비육이 나왔습니다.

사실은 이것보다 축산환경및 농가주택 환경오염예방에 대한 효과가 아주 커서 인근의 주민들의 평가가 아주 좋았습니다. 예를들면 길가에 오.폐수를 쌓아서 동네가 곤란했었는데, 톱밥발효우사로 인해서 그 부락전체가 깨끗해진것 처럼 좋은 효과가 나왔고, 발효된 퇴비는 양질의 좋은 발효퇴비가 되었기 때문에 그퇴비만 가지고도 비료없이 고품질의 유기농법에 의한 농산물을 생산할수 있다란 좋은 효과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금년도에 시범농가를 견학한 사람들이 회수로는 16회정도 됩니다만, 인원으로는 200명이 넘었습니다.

94년도에는 자력으로 이런사업을 많이 할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redacted] 고맙습니다.

그다음은 농어민후계자 선발과정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여론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잠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후계자 선발이 2-3년전부터 선발대상인원이 많이 늘어나고 그로 인해서 선발대상자들이 사실상 대상자가 아닌 사람들이 대상이 되어 상당히 사회의 여론의 지탄을 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이 지도소에서 심사를 할때 좀더 심도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예를들면, 농토도 없는사람이, 농사경력도 없는 사람이, 사슴 몇마리 가지고 있음으로 해서 후계자가 되고 그로인해서 대상이 되는 다른 후보자가 대상에서 탈락하는 그러한 일들로 해서 상당히 여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후계자들이 부실후계자가 많이 생기고 또

사회의 여론도 안좋은데, 이런 선발과정부터 철저하게 영농정착 의욕이 강하고 후계자로서의 자질을 가진사람이 앞으로 후계자가 되야하겠다 하는 그런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그래서 심사를 할수 있는 가장큰 권한은 지도소에서 가지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면에서는 정착의욕에 대한 50점만 가지고 있고, 나머지는 지도소에서 여러가지를 참작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후계자 선발과정을 좀더 심도있게, 지역여론도 많이 참고로 하셔서 선발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각읍면에 상담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93년도 절감예산 차원에서 그분들에게 지원하기로 했던 예산이 삭감이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redacted] 예산반영 되었다 삭감된것은 없습니다.

○ [redacted] 자료에 나와있는데로 집행이 되었습니까?

○ [redacted] 네. 그대로 다 집행이 되었습니다.

○ [redacted] 제가 듣기에는 제대로 지급이 안되어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들었는데..., 알겠습니다.

○ [redacted] 김종영 위원입니다. 8페이지에 보면 농촌소득사업및 특화사업추진, 각종지원사업 내역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으로 한 내역인것 같습니다. 그중에 보면 U.R대응 고냉지채소 망사하우스육묘시범 했는데, 30개소에 1ha, 사업비는 4,500만원, 망사육묘 하우스설치개소당 100평인데 30개소를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작목은 고냉지배추, 거기서 생산량 하고 소득금액을 보면 1ha에서 4,227kg이 생산이 되어서 소득은 58만,8천원이 소득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시범사업이라고 하셨는데 해보니까 이렇게 해서 되겠는지, 실지 앞으로 이런계획을 어떻게 하실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redacted] 망사육묘 하우스 설치는 100평을 해서 육묘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배추를 가지고 육묘할때 25일에서 30일정도 육묘하는 기간에 진딧물에 의해서 바이러스가 오염될 우려가 많기 때문에 설치한것입니다.

그다음 생산량은 10 a당으로 해서 300평 기준을 했으며, 이효과로서는 이것 망사육묘해서 정식한것과, 그냥 노지에 바로 육묘해서 한것과는 금년도 바이러스 오염이 별로 없었습니다만, 시범구에서는 약2.2%가 나왔고, 대q1구에서는 6.9%가 나왔습니다. 작년과 같이, 90년도와 같이 바이러스가 많을때는 상당한 효과가 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겠고 나온것은 정식해서 300평에 금년도에 배추값이 적어서 수량은 이렇게 나왔고, 정식한 소득은 58만 8천원이 나왔습니다 금년도와 같이 배추값이 적을때도 효과가 있었다 하는것이....,

○ [redacted]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만, 육묘를 시범해서 주수가 나와야 하는데 여기보면 kg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육묘를 하게되면 한번만 했는지 두번했는지...,

○ [redacted] 육묘는 대게가 1회내지 2회, 그러니까 연작으로 계속 이렇게 분산파종하는 농가는 여러번 되었는데, 그렇지 않고는 종합적으로 볼때는 1회로 보겠습니다.

○ [redacted] 그런데 어떻게 kg으로 나왔나요?

○ [redacted] kg으로 나온것은 주수는 보통 우리가 100평 생산된 주수는 지금 계산이 안됩니다만, 10 a당 3,500내지 4,000주를 갔다가 생산해냅니다. 이래서 정식되어서 수량으로 나온겁니다. 육묘 주수를 갔다가 나왔어야 하는데...,

○ [redacted] 시범사업으로 지원해준 100평의 하우스에서는 육묘를 해가지고 거기서 생산되는 묘를 본포에다 정식을 해서 후기생육은 본포의 노지에다 했습니다. 그리고 100평에 생산된 생산량이 아니라 이것은 일반재배한 농가와 마찬가지로 생산량은 무게를 따져야 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 [redacted] 그럼 4,227kg은 육묘장에서 육묘수량이 아니고 본포에 나가서 배추를 키워서 총 무게를 계산한것이 이렇다는 겁니까?

○ [redacted] 그렇습니다.

○ [redacted] 그럼 잘 맞지 않습니까?

○ [redacted] 단지 이사업을 지원할때는 바이러스 피해를 어떻게 하면 줄이느냐 하는 차원에서 육묘과정부터 철저히 차단을 해서 진딧물을 갔다

가 사용하자는 뜻에서 이사업은 했습니다.

○ 金鍾永 委員 그리고 또 한가지만 더하겠습니다.

1면 1특화 특산작목개발사업이라고 4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특산품 작목내용을 보면 장뇌,산마늘, 산초,산더덕,드룹,곰취,유휴지호박,부공해쌀 했는데 특산품으로 우리가 하기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조금 이해가 안갑니다. 여기 작목 나온것을 보면 생산하자면 몇년걸쳐 생산해야할 작목도 있고, 거의다 당년생산될 작목은 몇개 안되는데, 이외에는 없어서 여기에다 책정을 했습니까?

○ [illegible] 그것은 단지 예시를 한것 뿐이고 고정된것은 아닙니다.

이런 작물선정은 앞으로 지역주민들과 충분한 토론을 걸친다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선초 같은것도 해볼만한 사업이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것은 경직된 사업이 아니라 앞으로 작물선정은 충분히 주민들과 대화를 거쳐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金鍾永 委員 특산작목을 선정할때는 그래도 대량으로 생산이 되고 생산농가의 소득이 된다하는 작목을 선정해야 될것으로 압니다. 앞으로 작목을 선정할때 신중을 기해서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李致玉 委員 이치옥 위원입니다. 간단한것 한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유인물에도 여름 느타리버섯 해서 나왔는데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금년도 평창군에 각면에서 느타리버섯 재배를 해서 600만원에서 많이는 1,000만원까지 농가가 소득을 본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93년도에도 권장사업으로 하셨고 94년도에는 본군에 얼마나 예산을 투입해서 어떤방법으로 하시는지 계획하고 있는것이 있으면 소장님 말씀해 주십시요.

○ [illegible] 사실 느타리버섯재배는 우리군과 같이 좋은조건을 갖춘 군이 드뭅니다. 지금 미탄지구에서 생산되는 느타리는 제천만 가더라도 아주 제천지역에서 생산된것 보다도 상당한 고가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기왕에 기술도 축적이 되어있고 재배적지 이기도 하고, 해서 94년도에는 폐광을 이용한 냉기류와 저온을 이용해

서 약 15개 농가가 참여하는 단지를 조성하고자 군비 9,000여만원, 자부담해서 1억5,000만원 투입해서 단지를 조성하는 큰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요구는 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극히 미미한 예산이 반영되었습니다.

○ [redacted] 그러면 94년도 기본 예산편성에 성립은 안되었다는 말씀이네요? 계획만 가지고 계시지 돈때문에 못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 [redacted] 그렇습니다.

○ [redacted] 그렇다면 소장님의 좋은뜻이 반영될수 없네요?

○ [redacted] 명년도에 우리가 계상된것은 폐광을 이용해서 1,250만원은 계상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도에다 요구해서 여름느타리재배5동, 여름양송이재배1동 해서 6동인데 이것이 종합해서 약 2,2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합계가 약 3,600만원 정도로 내정이 되어 있는것으로 알고 있고 앞으로 추경이나 다른것을 이용해서 확보할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 [redacted] 본위원이 예산편성을 할때 지도소 해당과장님께도 느타리 버섯이 농민들 소득이 좋다는 말씀을 올렸고 또 본군의 중책을 맡고있는 기획실장님께도 제가 그말씀을 올렸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다리를 하나 못놓고 농로를 몇백 m를 멀 개설하더라도 지금 가뜩이나 어렵고 농민들이, 또는 농촌의 젊은사람들이 산업체로 공장으로 도시로 다 보따리를 싸가지고 가기 때문에 농민들 소득과 연결되고 소득이 좋은 것은 꼭 한가지 덜하더라도 해야한다는 말씀을 올렸는데, 지도소에서 계획하고 있는 그런 좋은사업들이 반영이 잘 안되는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말씀을 올리고 미탄면하고 봉평면하고 방림면은 본위원이 얘기듣기로는 버섯이 잘되고 기온이나 여러가지 여건상으로 좋은곳이다 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앞으로 농민들이 소득을 올릴수 있는 이런것은 적극 권장을 해서 떠난 농촌에서 그야말로 돌아오는 농촌이 되도록 그렇게 잘좀 지도해 주시기를 부탁을립니다. 이상입니다.

○ [redacted] 노력 하겠습니다.

○ [redacted] 박용태 위원입니다. 몇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건강사랑방 푸른쉼터 설치 1개소는 농민들 위해서 착상한것은 좋습니다만, 장소는 어디에다 설치할것입니까?

○ [redacted] 진부면 간평 1리에 금년도 처음 시도했습니다.

○ [redacted] 앞으로 계획은 없습니까?

○ [redacted] 앞으로 계속 발전시켜야 되겠습니다만, 이것이 금년도에 도비보조분으로 집행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94년도에는 도비보조분이 없어졌고, 간단한 사랑방 휴식처로 해서 이것보다 조금 간단한 놀이기구,체육시설을 할수 있도록 이렇게 지시를 받고 있습니다.

○ [redacted] 대추나무 빗자루병 방제는 약제가 무엇입니까? 주사약입니까?

○ [redacted] 네. 대추나무 빗자루병이라는것이 바이러스와 세균하고 그사이에 있는 병입니다.

마이크로프로즈마라 해서 이것은 항생제를 나무에다 주사를 놓는것입니다.

그런방법으로 해서 실효과가 있는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방법으로 치료를 시켜볼까 하고 계획을 세웠던 겁니다.

○ [redacted] 그 계획은 다른 유실수에는 계획이 없습니까?

○ [redacted] 대추나무 빗자루병 방제는 다른 나무에는 현재 약제로서 병균을 막는것이 시험성적에 나와 있는것은 없습니다.

대추나무 빗자루병에 한해서 옥시테트라사이클린을 가지고 투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redacted] 이것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각읍면에 찾기위해 조사를 해봤더니 7개읍면에 20,000주가 있습니다. 지난해 시기적으로 조금 늦었지만 미탄을 해보니까 효과가 좋습니다. 내년도에는 전면적 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요구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계상이 되었습니다. 틀림없이 하겠습니다.

○ [redacted] 또 한가지 U.R 대책에서 소득을 보기위해서 여러가지 하는것을 보면 상당한 규모를 해놓았는데, 이대로 전부 실시되다 보면, 우리 평창군은 U.R대책에 대해서 근심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겠다는 흐뭇한 마음을 가지면서, 여기보면 산채생산가공단지조성 1개소 했는데 이것은 저온냉동저장 시설이

되있어야만 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다 설치할겁니까?

○ [redacted] 이것은 93년도 실적입니다.

저온냉동저장시설인데, 되어있는 시설을 이용해서 거기다가 비수요기에 고가로 판매하기 위해서 드롭을 집어 넣은것입니다.

○ [redacted] 어디에 했습니까?

○ [redacted] 용평면 도사리에다 설치 했습니다.

○ [redacted] 그곳에는 저온저장고가 있습니까?

○ [redacted] 저온저장고가 되어 있는 시설에다 넣습니다.

○ [redacted] 한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U.R 대책를 해서 유휴농지에다 호박재배를 하신다고 했는데, 호박종류는 보니까 3가지인데, 그것이 여름철에 먹는 호박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가을에 가서 수확을 하는 호박입니까?

○ [redacted] 애호박으로도 사용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휴지에다 식재를 해서 가을에 늙은 호박으로 나왔습니다.

○ [redacted] 판로는 용이합니까?

○ [redacted] 8개소에다 8ha를 했는데, 판매는 가락동 한성상회 이용원씨라고 해서 가락시장에다 연결을 시켜 주었습니다. 대략적으로 봤을때 8kg 짜리를 3,500원정도 받았고, 10kg짜리 4,000원, 약 8kg이하짜리는 한 3,000원정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품질에서 좌우되는데, 푸른색이 있다던가, 아니면 망가진 것은 가지고 가지 않고, 그것은 다시 가공용으로 판매를 할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늙은호박으로 판매가 실적이 되었습니다.

○ [redacted]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redacted] 곽문춘 위원입니다. 영농후계자 선정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3년도 영농후계자 사업지원대상 평가표에 보면, 영농정착의욕이 50점인데, 영농후계자가 선정이 되자면 영농정착에 의욕이 가장 좋은점수를 받아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후계자 선정에 보면 10점짜리가 많습니다. 반도안되는 10점짜리를, 의욕이 50점인데, 10점짜

리를 어떻게 영농후계자로 선정을 했나, 이렇기 때문에 불실후계자들이 많이 발생한다 본인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 [redacted] 5가지 항목이 총500점 아닙니까?

○ [redacted] 50점이 가장중요한 기준인데, 10점짜리를 어떻게 후계자로 선정했습니까?

○ [redacted] 상대적으로 다른곳에서 점수를 많이 받았습니다.

○ [redacted] 다른 점수는 중요하다고 안보는데, 일단은 정착할 의욕이 있는사람이 후계자로 선정이 되야지, 다른점수 많다고 의욕이 없는 사람을 선정을 해놓다 보니까 타지로 가고 하는것 아닙니까?

○ [redacted] 이게 영농정착의욕이 전체 500점 만점에서 50점을 차지하도록 지침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지도소에서 하는것이 아니고 읍면에 있는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에서 점수를 배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상위10% 미만일때는 50점, 상위10-20%미만일때는 45점 이런 배점기준이 있습니다. 이것은 읍면에서 조정을 해서 과연 이사람이 의욕이 있는 사람이냐, 없는사람이냐 하는것은 읍면에서 심사를 해서 점수를 저희한테 보내주면 저희가 그것을 이용을 하는것이고 문제는 전체 500점 배점기준에서 우리들이 봐도 영농정착의욕이 50점이라 했을때는 조금 빈약한 점수가 아니냐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지침상에는 450점은 지도소에서 점수를 배점하도록 되어 있고 50점 정착의욕은 각읍면에서 농어촌발전위원회에서 심사를해서 배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redacted] 잘못된것이 영농의욕 정착에다 점수를 많이 줘서 면에서 점수 배점을 많이한것이 있어야지...,

○ [redacted] 저도 그것은 동감입니다.

○ [redacted] 여기서는 서류심사만 하는것이지, 사람의 기준을 평가할때는 그래도 해당되는 면에서 똑똑히 알텐데 50점밖에 안주는 것은 배점점수가 잘못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 [redacted] 이것은 앞으로 건의해서 점수를 많이 나올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redacted] 이상입니다.

○ [redacted] 김낙운 위원입니다. 농어민후계자 선발기준에 의한 여러가지 질문이 나오셨는데 1년에 40명씩 선발하기 시작한것이 한 3-4년 되었습니까?

○ [redacted] 한 3-4년 정도 되었습니다.

○ [redacted] 선발기준을 보면, 읍면별로 인원을 배정을 하는데, 리수가 많고 인원이 많은 지역에는 5명 배정을 하고, 인구가 작은지역에는 3명정도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후계자 대상자하고 지역의 인원하고 비례는 하겠습니다만, 그러나 후계자 예상인원이 꼭 그렇지만은 않으리라고 봅니다. 제가 볼때에는 신청자를 비례해서 후계자를 선정해야 하지 않겠는지 생각합니다. 일단 인원이 리수가 작고 사람이 적게사는 면이라고 하더라도 후계자 대상자가 많을수도 있는것이고, 또 인원이 많다 하더라도 후계자 대상이 적을수도 있는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때는 신청자 인원을 비례한 배정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고려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 [redacted] 참고로 읍면별 배정기준을 보면 예비후계자수가 60%를 점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해당지역의 농가수가 20% 반영 하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 경지면적 및 진흥지역면적을 20% 반영하도록 이렇게해서 100분율로 해서 읍면별로 배정기준은 일단 설정되어 있습니다.

○ [redacted] 후보자가 많은 지역을 우선 배정할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 농촌에 정착하고자 하는 젊은인력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병력특혜지도를 부여하고 있는데, 우리 평창군에서는 몇명이나 이런 혜택을 받고 있습니까?

○ [redacted] 1명이 신청을 했는데, 아직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 [redacted] 제가 볼때에는 이렇게 좋은제도를 많이 이용하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나와있는 후계자 선정기준이나 확정된 내용을 보면, 거의가 나이가 많은 사람들입니다. 40세에서 부터이기 때문에 거의가 40세에 가까운사람, 35세이상 이런사람들이 거의가 영농후계자로 책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젊은후계자들, 나이가 지금 군에 갈정도의 나이가 된사람들은 거의가 탈락되고 있습니다. 기회가 많으니까 탈락시키는 것은 바람직 할지 모르지만 그런사람들이 들어와서 병력특례도 받고 또 장기적으로 영농설계를 해서 후계자가 되어야 하는데 그런경우도 많이 있어야 하는데, 나이가 젊은 후계자 신청자들은 거의가 탈락되는 것이 자료를 보면 나타나는데, 제가볼때에는 앞으로는 이런 병력특례제도도 많이 활용할수 있도록 정말로 정착의욕이 있고, 앞으로 농촌지도로서 영향을 가진 그럼사람들이라면 나이가 어리더라도 후계자로 책정이 되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 [redacted] 좋으신 말씀인데, 기존신청한자 중에서 93년도에 연령제한이 40세로 묶였습니다.

금년에 처음 시도했기 때문에 그래서 40세로 제한이 되었기 때문에 93년도에는 가급적이면 년령이 초과되면 내년도에 가서는 자격상실하니까 이사람들을 우선 구제하는 방향으로 해보자 해서 금년도에는 연령이 많은 사람을 우선해 책정을 했고, 금년부터 새로 신규 신청자들은 35세부터 신청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내년도의 신청자는 34세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97년도에 가면 30세까지 연령이 낮아진다 하는 얘깁니다.

그런 지금현재 제도를 이용을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점차 후계자는 더 젊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redacted]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냉해피해로 인한 답작농가들이 명년도에 볍씨종자 확보가 상당히 어려운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볍씨종자를 확보할수 있는 어떤 지도소에서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redacted] 지금 관내 저희관내에 소요되는 종자수는 75,800kg 정도 소요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철원 동송에서 22,000kg 가들어왔고, 그다음에 보급종이 약 16톤 정도 확보가 되고 있습니다.

요즘 영월 주천에 오대벼가 작년도 보급종으로 나갔던 종자인데, 약 5톤을 확보해서 희망농가에 한해서는 우리가 알선해서 종자를 공급할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5톤중에서 1톤이 들어왔고 아직 4톤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희망농가에 대해서는 공급할수 있는 그런 양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 [redacted] 신청을 받아 보셨나요?

○ [redacted] 신청은 지금 현재 각 상담소장님들이 대충해서 얼마 소요된다고 해서 상담소장님들이 직접 가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 [redacted] 집계는 안나오고요?

○ [redacted] 네.

○ [redacted] 아직까지 확보된 내용으로 봐서는 전체 볍씨를 확보하기는 상당히 부족한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시기가 시간이 갈수록 신문에도 보도가 됩니다만, 볍씨종자 구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예상하는 내용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좀더 희망량을 빨리 조사를 해서 강원도내에서도 철원 같은곳은 농사가 잘되었으니까 그런곳에 확보할수 있도록 배려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 [redacted]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 없으시면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농촌지도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군본청과 소속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20분 감사중지)

(14시36분 감사계속)

○ [redacted]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읍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오늘 바쁘신 중에도 본 감사장에 출석해주신 읍면장님께 감사 드립니다.

그러면 평창읍,방림면,대화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일괄 실시를 선언합니다.

읍면에 대한 감사는,

감사대상 읍면별로 업무보고를 간략히 들은다음 질의는 일괄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창읍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redacted] 평창읍의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포괄사업비, 읍면자체사업, 국토공원화사업, 취로사업, 이장수당, 의용소방대출동수당, 군에서 재배부된 사업순으로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창읍의 기구및 인원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원은 46명이며, 현원은 45명입니다.

따라서 결원은 토목서기보 1명입니다.

계별로 인원은 총무계가 8명, 새마을계 3명, 재무계5명, 사회계5명, 호병계7명 산업계가4명, 건설계가13명 입니다.

소관별 업무분장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무계는 읍직원의 인사관리, 예산운영 및 집행, 재산관리등을 하고 있으며, 새마을계는 지역개발및 국토공원화 광고물등을 하고 있으며, 재무계에서는 지방세징수및 부과, 국공유재산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계에서는 영세민보호관리및 환경보호업무, 위생업무등입니다.

호병계에서는 호적, 주민등록, 병사, 민방위, 소방업무 입니다.

산업계에서는 전답작 및 농지이용에 관한업무, 산림,축산업무입니다.

건설계에서는 지역개발, 취수관리, 건축및 도로관리등을 하고 있습니다.

기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redacted] 평창읍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방림면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redacted] 방림면장 김진석입니다.

방림면 93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순서는 먼저 기구및 인원현황, 읍면장포괄사업비집행내역, 군도화단조성사업 집행현황 92년도 각종사회단체보조금집행현황과 취로사업집행내역, 의용소방대출동수당 및 이반장수당지급내역, 도급경비지출현황, 군에서 재배부한 사업추진및 집행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구및 인원현황입니다.

저희 방림면은 총 34명에 총무계8명, 재무계3명, 복지계9명, 호병계4명, 산업개발계5명, 출장소 5명으로 구성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구별 업무현황은 총무계에서는 면업무

총괄과 기획,총무및 홍보, 각종사업, 세출, 비밀을 관리하고 있으며, 재무계에서는 세입과 국공유재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복지계에서는 사회에서 가정복지와 환경, 보건지소는 지난12월1일자로 의료원으로 넘어 갔습니다만, 가족계획과 보건지소운영, 호병계에서는 호적및 병사, 민방위, 주민등록, 산업개발계에서는 농지및 산업, 지역경제와 건축,토목,산림,축산업무를 맡고 있으며, 출장소에서는 호적및 주민등록, 복지회관운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고 이하는 유인물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redacted] 방림면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화면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redacted] 대화면장 조영배입니다. '93행정사무감사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읍면장 포괄사업집행내역, 국도,지방도 화단조성사업및 예산집행및 사후지도감독현황, '92각종사회단체보조금집행현황, 취로사업현황및 집행내역, 의용소방대출동수당 지급, 이장수당지급현황, 반장수당지급내역, 도급경비지출현황, 군에서 재배부한 사업추진및 집행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기구및 인력입니다.

대화면은 총정원이 35명중에 현원33명으로 결원2명이 있습니다.

계별현황은 총무계가 8명, 재무계가 3명 복지계가 7명, 호병계가 5명, 산업개발계가 10명으로 직제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기본사무현황을 보고드리면,

총무계가 기획, 문서관리, 이.반장관리, 행사및회의, 통계, 회계, 문공, 관광, 반상회,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을 관장하고 재무계는 지방세부과징수, 세외수입부과징수를 담당하며, 복지계는 사회복지사업, 환경위생보건의료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호병계는 호적,병사,민방위,주민등록, 제증명,소방업무를 관장하고 있고, 산업개발계는 전답작 작목, 특작, 양정,건설 상수도, 농지, 축산, 산림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읍면장 포괄사업비 집행내역 이하는 유

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대화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redacted] 면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지금까지 세분의 읍면장으로 부터 업무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일괄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redacted] 이치욱 위원입니다.
먼저 평창읍장님께 두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어제 환경보호과의 사무감사시에도 과장님께 본위원이 질의를 한바 있고, 또 의정보고회당시 평창읍에서도 직원들에 대한 정원및 현원표를 현관에 들어가는데 왼쪽으로 부착해놓은것을 본위원이 보았는데, 어제 환경보호과의 현황을 보니까 평창군청 본청에 환경미화원이 2명 평창읍에 13명, 진부에 7명, 도암에 7명 봉평에 3명, 용평에 3명 이런 순으로 되어 있고, 방림 미탄은 각각 2명씩 입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지금 거기에 대한 자료를 준비를 놓았습니다만, 읍소재지다 또는 군청소재지다 그러면 군청소재지에 군청내에 두분이 있는데 시내만 13명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것인지 여타 읍면과 균형이 전혀 안맞는다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물량이 그만큼 많은량 하는데, 물론 평창읍에는 분리수거를 하는 분이 2명이나 3명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평창읍은 너무 많습니다.
그냥 임의대로 본군에서 1명 더 필요한데 도저히 바빠서 못한다 하면 1명,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것 같은데, 이것은 여타면과 너무 대조적이다 해서 본위원은 어제 환경보호과장님께도 이것을 질의를 했고, 또 구체적인 말씀도 올렸고 읍장님께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들은후에 94년도 기본편성 정기예산에서 삭감해야 한다 13명이 있어야 한다는 근거가 없는한은 예산을 삭감해야 합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임시직및 기능직은 단기사역이기 때문에 당해년도 12월말에 해고할수 있습니다. 노동법상 해고할수 있기 때문에 내년도 1월1일부터는 채용을 안해도 된다 그렇습니다.
동료위원들께도 이말씀을 차후에 올리고 이것은 반드시 정리가 되고 또 예산에서 필요한 인원만큼 거기에 상응하는 예산이 삭감되야 합니다. 꼭 그렇게 할겁니다. 그런데 단 주장할수 있는 뚜렷한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본위원이 그렇게 말씀드리니까 읍장님께서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고 두번째로 본위원이 관변단체에 대한 서류를 요청했는데 이렇게 보니까 없는것 같습니다.

바르게살기 이렇게 해서 예산재배정해서 사회단체에다 정액지급하는 단체가 있는데, 의회에서 연락이 안되었는지, 또 그렇지 않으면 바쁘셨는지 안되었습니다. 그것은 좋구요, 거기에 대한 한가지만 질의을 하고자 합니다.

바르게 살기운동, 본위원도 바르게살기 운동에 어떤 행사가 있다고해서 나가면 정액보조단체이기 때문에 그저 쓰레기분리수거캠페인 해서 어깨띠를 한번두르고 동네를 한바퀴 돌고 그예산 가지고 가서 도랑가에가서 술도먹고 개도 잡아먹고 하는데, 과연 평창읍에서는 그런것을 배정해 드린후에 감독을 하셨는지요?

그리고 금액은 상당한 금액으로 알고 있는데, 얼마나 평창읍바르게살기 협의회장께 배정을 하셨는지 두가지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redacted] 방금 이치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미화원 13명중에서 지금 노성산에 현충탑이 있습니다. 거기 전담요원이 1명이 배치되어 있고, 군에 환경재활용관계때문에 공병수집을 대화,미탄,방림등지에서 일제수거를 전담하는 직원이 2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읍에 지금현재 근무하는 인원은 사실상 10명입니다. 그리고 저희들10,800명의 총인구중에서 50%에 해당하는 약 5,000여명이 현재 시내 도시계획 구역내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생산되는 쓰레기량은 다소 짐작이 가리만큼 많은편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읍 군소재지에 있기때문에 저희들 본연의 쓰레기 청소문제 이외에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현충탑에 눈이 오면 전원이 길을 쳐야 하겠고, 또는 고수부지에 잡초가 우거지면 미화원이 가서 비는데 보통 이것이 1번 제초작업을 하자면 2-3일 걸립니다. 여름에 한창 성초기에 들어가면 아주 수시로 깍아야할 형편입니다. 또한 남산에 소공원이 있습니다. 소공원내에 잡초가 무성해 지면 그지역내에 운동기구를 사용할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지역

에도 잡초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유독히 시가지내에 큼직한 하천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관리, 또 시가지의 지금현재 오물수거관계, 또 여기에 분리수거를 관계해서 현지에 미화원에 종사하는 사람이 있고, 또는 현지에는 저희들이 쓰레기장이 종부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지역에는 시내와 가깝고, 또 이시내에서 불수없는 오물들을 일대 농가에서 밤에 몰래 갔다가 놓고 불을 지릅니다.
이것은 건축물 부자재 같은것을 불을 지르기 때문에 이것도 단속을 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미화원들이 이렇게 인원이 쪼개지다 보니까 아침 늦게는 7시겠지만 보통 5시에 나오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온종일 해야하고, 장날이면 장날쓰레기를 다음날 아침에 감당할 방법이 없어서 저녁에 야간작업을 해가면서 그것을 약 1트럭정도는 실어내야 합니다. 그래야지 뒷날 일반쓰레기를 수거할수 있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행여나 저희들 인원이 많은 인원으로 생각됩니다만,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읍에서는 이 인원이 있어서도 제나름대로 업무를 다 추진못해서 어떤 오지에 오물이 쌓였다고 지적받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점 감안해 주시고 타면에 부족된 인원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그면에도 증폭되어가는 쓰레기량에 의해서 인원이 더 증원되야 할 형편이다 생각됩니다.

○ [illegible]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읍장님 좋은말씀 주셨는데, 평창읍에 취로사업비가 1,000만원입니다. 환경미화원은 노성산에 가서 청소를 했다는것은 좋은데 고수부지에 가서 풀을베고 이런것은 해당이 안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보면 집행액이 1,086만8천원입니다. 그러니까 노인들을, 부녀자들을 취로사업 명분으로 해서 고수부지나 이런곳에 풀메는것은 그런분들을 시켜도 됩니다. 쓰레기 청소를 하기 위해서 이분들이 배치된것이지 평창읍의 어느 풀메는것은 직종상 안되거든요.
읍장님 설명을 들으니까 이해가 갑니다. 다음 답변해 주십시요.

○ [illegible] 죄송하지만 한말씀 더드리겠습니다.
물론 미화원이 그것이 자기 본연의 업무는 아닙니다만, 여기서 행사를 취급하고

또 문제가 있을때는 거기에 종사하는 예가 있기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읍면의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에 지급되는 돈이라면, 저희 읍에서는 보조금을 재배정할수 없기 때문에 군에서 직접 집행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하고는 이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에 지급되는 금액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 [redacted] 그러니까 군에서 읍으로 배정해가지고 그분들한테 읍에서 지급하는 것이 아닙니까?

○ [redacted] 아닙니다. 저희는 군에서 직접 합니다.

○ [redacted] 제가 몰랐습니다. 미안합니다.

○ [redacted] 이상훈 위원입니다. 자료에 대해서 문의하겠습니다.

평창읍의 행정감사 자료제출한것 보니까 8페이지에 93년도 공원화사업장 순찰일지가 붙어있고, 꽃길화단관리카드가 제출되어 있는데 이건 무슨애깁니까? 왜 제출되었습니까?

○ [redacted] 이것이 뒤에 나온 공원화 사업이라던가, 또는 자체예산 사업에 대한 증빙을 어느정도 첨부하는 과정에서 간략하게 넣었습니다.

○ [redacted] 공원화 사업은요?

○ [redacted] 소상한 내용은 추진실적, 소공원 가로화단 꽃길현황 관계는 제가 별도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 [redacted] 자료요구를 안했는데 이런것이 제출이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 [redacted] 각읍면별로 의용소방대 출동수당이 읍면별로 다릅니다.

출동수당은 똑같지 않습니까?

○ [redacted] 5,67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 [redacted] 여기보면 방림에는 5,000원, 대화는 5,600원, 출동수당이 다 다르네요.

○ [redacted] 개인별 지급기준이 5,67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 [redacted] 쓰레기 미화원 문제는 이치욱 위원님께서 말씀 드렸는데, 인구를 보던가 지역을 보던가 진부하고 비슷할겁니다. 미화원 차이가 거의 곱이 차이가 납니다. 읍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부가 적다고는 생각 안하십니까?

○ [redacted] 평창읍은 10명입

니다.

○ [redacted] 자료를 보면 군에 2명이 있고 나머지가 13명입니다.

○ [redacted] 저희는 전체가 13명중에서 군에 2명이 나가있고, 현충탑에 고정배치되어 있는 1명이 있어 실지 10명이 쓰레기 수거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 [redacted] 알겠습니다. 앞으로 인원을 조정해야 되는데...,

○ [redacted] 위원님은 저희를 진부에 비하면 3명이 많은편인데 사실상 저희들은 때에 따라서 그만한 3명의 인원이 소요된다고 인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redacted] 김낙운 위원입니다. 평창읍의 자료를 보니까 취로사업 노임지불내용을 봐주시겠습니까?
제가 이해를 못하는지 모르겠는데, 98세대 836명으로 되어 있고, 1차에서 부터 6차까지 되어 있습니다만, 15세대 76명 10세대 76명, 세대수는 틀리는데 인원은 똑같습니다. 어떻게 되서 그런것인지 모르겠습니다.

○ [redacted] 세대수와 인원은 15세대에서 76명, 10세대에서 76명이 되었는데 여기서는 76명이 연인원이 됩니다. 그렇기때문에 세대수가 차이가 있어서 그렇게 될수가 있습니다.

○ [redacted] 연인원 입니까?

○ [redacted] 15세대에서 76명이 동원되었었고, 그다음 10세대에서 76명이 되었습니다.

○ [redacted] 그럼 인원을 76명으로 한정을 한것입니까?

○ [redacted]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왜냐하면 배정이 1차에서 6차까지 나왔는데, 차별로 금액이 동일하게 배정되기 때문에, 그래서 인원을 세대중에서 인원이 한정되어 있기때문에 연인원이 동일합니다.

○ [redacted] 기계가 하기전에 사람이 하는일인데, 여러차례 하다보면 인원이 더나올수 있고 작게나올수도 있고 그런데, 공히 76명씩 계속 나왔거든요. 이해가 안갑니다.

○ [redacted] 저도 그렇게 생각해봤지만, 배정된 금액이 한정되 있고 해서 숫자에 맞추다 보니까 공교롭게도 그렇게 생각이 들도록 되었습니다.

○ [redacted] 다른면은 보니까 이렇게 자료가 안되었습니다. 나오는 숫

자에 비례해서 금액이 지불된것으로 되었는데 평창읍만 인원이 똑같습니다. 자료를 고의적으로 만드신 기분이 드는데 이해가 안됩니다.

읍장님도 이해가 안될겁니다. 76명을 박아놓고 써도 때에따라서 개인사정으로 빠지는 사람도 있고 해서 꼭 그인원을 하기는 어려울텐데 이렇게 인원이 고정적으로 76명이 세대수는 다 틀린데 인원이 고정적으로 나왔다 하는 자체는 상당한 의문이 갑니다.

그리고 뒤에 지출결의서를 보면 금액이 틀립니다.

○ [illegible] 49만4천원이지요 그다음 또한건 49만4천원짜리가 또 있습니다. 1차가 2분해서 나갔기 때문에 합하면 98만8천원이 됩니다.

○ [illegible] 계속 그렇게 나갔습니까?

○ [illegible] 아닙니다. 1차분만 그렇게 되었을 겁니다.

○ [illegible] 이해가 잘 안되는 부분인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장수당을 지급한 내역을 보니까 지급날짜가 많이 틀립니다.

대화나 방림은 비교해보니까 수당지급한 날짜가 별차이가 없는데 평창은 보니까 30일도 있고, 31일도 있고, 5일도 있고 2일도 있고 말이지요. 이렇게 날짜가 상이한데 군에서 수당이 지급이 되긴 정확한 날짜에 지급이 되었으리라 보고 다른면을 보니까 날짜가 거의 같은날짜에 지급이 되었는데, 평창만 유독 수당이 날짜가 상이하게 지급이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 [illegible] 여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불규칙하게 지출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회계에서 집행을 지연시킨 겁니다. 이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원래는 20일경이면 다 집행이 되는것이 정상인데, 저희들 총무계에 회계부서가 상당히 여러번 바뀌였습니다. 인사이동에 의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제때 못지출되고 2월의 경우에는 심지어 12일이 지연되었고 7월달에는 15일이 지연되었고, 보통 5-6일이 지연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집행에 대해서 잘못되었다는 것을 용서받을 일이고 앞으로 잘 집행하겠습니다.

○ [illegible] 공무원들 봉급은 어떻게 지급합니까?

○ [redacted] 매월 20일입니다

○ [redacted] 제가 알기에는 공무원들 봉급은 제때 나갔을겁니다. 그것은 안나가면 난리가 나지요. 그런데 농촌이 사실 어려운데, 요즘은 이장을 누가 할려고 하지 않습니다. 마지못해 지역을 위해서 봉사한다는 입장에서 지금 이장들을 하는데 많지 않은데 공무원들 봉급나갈때 같이 지불이 되면, 기분문제 아니겠습니까? 이문제를 꼭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 [redacted] 죄송합니다.

○ [redacted] 그리고 대화면장님께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농산물집하저장시설이 대화면 신2리에 1동 들어갔지요?

○ [redacted] 사업비가 4,800만원이 보조가 되고 1,200만원이 자부담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redacted] 제가 가까이 살다보니까 여론을 많이 들었는데,

사업을 동네에서 유치를 하는 과정에서 마을주민들한테 어떻게 얘기가 되었나 하면 보조가 3,000만원, 자부담이 3,000만원 이렇게 얘기가 되었데요.

그래서 주민들은 3,000만원 부담능력이 없으니 못한다 그래서 몇몇이서 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그러다 나중에 우연히 군에서 나온 실무자한테 물어봤더니 보조금이 4,800만원이다, 자부담이 1,200만원이라는 사실을 안겁니다. 그것때문에 상당한 여론이 있었던걸로 압니다. 그래서 처음에 할려고 했던 사람은 그것이 발견이 되니까 사업을 못하고 다른사람들이 사업을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해야할 위치도 아닌곳에 시설을 하게되고 업자관계도 상당한 의욕이 가고 이런 문제가 있다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면장님도 내용을 아실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 [redacted] 알고 있습니다.

○ [redacted] 그내용을 설명을 해주십시요.

○ [redacted] 위치는 농산물집하시설및 저온저장고 시설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군에서 당초 사업선정을 해가지고 신2리에 책정이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금이4,800만원인데, 거기에 부지매입비가 그당시 정하원씨가 이장을 하면서 주민총회를 하기전에 사업계획서를 세우는 과정에서 부지매입비를 20,000원으로 예상을 한것

을 아마 20만원으로 계산한것으로 나중에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 [redacted] 그건 이해가 안가잖아요?

○ [redacted] 글쎄, 그렇게 해서 자부담이 늘어난것으로 마을총회를 일단은 해가지고 자부담이 너무 많이드니까 일부는 불참을하고 몇몇이 참여를 해서 계약을 일단은 하고 공사를 하기 전에 그것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저도 면에서 직접 사업비를 전도받아서 집행하는 사업은 아닙니다만, 저희도 관리를 해가지고 다시 마을총회를 개최해서 전체적으로 바로잡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재직중인 이장하고 지도자 전부해서 부지도 전부 확보를 하고 진입로도 전부 확보를 해서 공사가 완전히 끝나서, 금년도에는 활용을 못했습니다만, 내년도부터 정부의 보조된 가치만큼 활용을 할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 [redacted] 제가 알고 있기에는 공사가 완결이 안된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상당한 의혹을 가지고 있고, 아직도 직접참여해서 하는사람들 까지 궁금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면 모처럼 보조를 집행해서 농민들에게 도움을 줄려고 했던 사업이, 그지역 주민들은 얼마나 불신을 하겠습니까? 면사무소, 군청, 의회까지도 불신 안하시겠습니까? 이런 불신할수 있는 소지가 아직도 많이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면장님이 돌아가시면 그지역의 주민들을 한번 만나셔 가지고 그 문제로 인한 어떤 의혹의 소지가 없도록 면장님이 앞장서서 해소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 [redacted] 알겠습니다.

○ [redacted] 방림면장님 참석하셨는데, 오늘도 상당히 쟁점화 되었던 부분인데 버섯봉의 규석광산문제를 상당히 지역주민들이 많은 민원을 제기했던것으로 알고 있는데 면장님이 알고 계시기에는 지금현재 지역주민들이 어느정도 인식을 하고 있는지, 민원의 소지가 다 해소가 되었는지, 또 앞으로도 어떤 불만의 소지가 있을런지, 면장님 아시는 대로 답변좀 해주시겠습니까?

○ [redacted] 지금 현재까지는 회사에서 진입로에 대한 석축을 요전에 했습니다. 석축을 하고 아직까지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지금 주위의 몇분들이 당초에 애기를 했던 그런사람하고 절충을해서 완화를 시키고 있고, 지난번에도 그사람이 애기를 했습니다만, 당초에 법원에서 판결난것에 대해서 불만족 스럽다,

○ **委員長 李相薰** 방림면장님 잠깐 답변을 중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장님께 동의를 구하겠습니다.
현재 17시가 지났으므로 오늘 예정된 회의시간이 지났습니다만, 아직까지 감사일정이 남아 있으므로 감사를 계속 진행코자 하는데 동의하여 주시겠습니까?
(" 동의합니다" 하는이 있음)
고맙습니다.
그러면 방림면장님 계속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芳林面長 金振石** 지금현재까지는 아직 진척사항은 없습니다. 거기서 중단상태에 있습니다.

○ **金樂雲 委員** 중단되었습니까?

○ **芳林面長 金振石** 민원발생소지가 지금 잠정적으로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사업은 그냥 합니다.

○ **金樂雲 委員** 민원의 소지가 남아 있는데 중단된겁니까? 민원의 소지가 해소가 된겁니까?

○ **芳林面長 金振石** 해소는 아직 안되지요. 주민의 욕구는 계속 전자에 주장하던 그사항을 계속 하는것이고, 회사는 회사대로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계속 사업은 집행하고 지금 그런상태로 있습니다.

○ **金樂雲 委員** 그렇다면 언제가는 민원이 계속해서 생길수 있는것 아닙니까?

○ **芳林面長 金振石** 그렇다고 보겠습니다.

○ **金樂雲 委員** 근본적으로 면장님이 앞장서서 해결할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 **芳林面長 金振石** 지금 우선은 민원을 제기한 사람들의 의견은 제가 가끔 그런얘기를 하긴 하겠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일단은 법원의 판결이 불만족스럽기 때문에 다시 제동을 해야 하지않느냐 이렇게 까지만 나오고 있습니다.

○ **金樂雲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李致玉 委員** 이치옥 위원입니다. 대화면장님께 취로사업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취로사업 현황을 보면 쓰레기 수거도 하

고, 도로변제초작업, 국도변제초작업, 쓰레기수거작업을 많이 하셨는데, 취로사업비를 배정하면서 어떠어떠한 목적에 사용하라는 내용이 있겠지요?

○ [redacted] 전에는 취로사업이 사업의 목적보다는 영세민 구호차원에서 사업을 한것입니다.

각종 취로사업을 하면서 영세민 구호보다는 사실상 사업의 비중을 많이두고 취로사업을 시행을 했습니다만, 근래에 와서 전에는 취로사업으로 소하천 제방이라던가 석축이라던가, 또 간단한 시멘트 작업같은것 까지도 공사를 유지 시켰습니다만, 최근에는 영세민들이 고령화가 많이 되었습니다. 전에는 젊은사람들도 영세민으로 있었습니다만, 각면공히 거의다 노동능력이 사실 없는 그런분들이 취로사업자로 대상이 되서 취로를 나오기 때문에 군에서도 소하천 같은것은 공사관계는 하지 않도록 지침을 시달했고, 따라서 국도변을 위주로 해서 소하천 환경정화라던가, 쓰레기장, 쓰레기수거, 그다음 제초작업을 위주로 해서,

○ [redacted]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읍면장님의 재량하에 아무거나 판단을 해서 시키면 좋겠다 하면 작업을 시킨다는 말씀이지요?

○ [redacted]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하천 같은것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redacted] 그런데 어제 환경보호과에서도 본위원이 말씀을 올렸는데 취로사업이라는 근본목적은 참좋은데, 취로사업을 하고있는 것을 국도변이나 지방도나 농로에 보면 요즘에 서리가 와서 풀이 다말랐는데 풀을 뜻고 앉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산낭비가 아닌가 그런생각도 드는데 결국 영세민 구호라는 측면에서 국가에서 취로사업비를 적절히 배정해서 그들로 부터 작업장에 나와서 한다는 의욕도 고취시킨다 그런데도 뜻이 있고 좋긴좋은데 제가 볼때는 뭔가 실효성이 있는 작업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군청에서 어떤작업을 시켜라 하는것이 시달이 되어 있나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 [redacted] 공문시달은 안되었습니다.

○ [redacted] 그리고 여기 현황에 보니까 어떤 취로사업을 할때 30명이 나왔다 하면 10명씩 해서 반장한테 시켜서

노임을 지급할때 일괄 그분한테 지급합니까?

○ [redacted] 그래서 취로사업은 사실상 매일매일 지급을 하는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매일지급을 할 수가 없는 입장이고 본인들도 매일 원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주급으로 지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 [redacted] 그전에 취로사업을 할때 보니까 하루하고 명단을 작성해서 인장날인하고 돈내주고 그런것을 봤는데 지금 이서류는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전에 소하천 사업이라던가, 공사를 위주로 해서 사업을 할때는 십장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십장은 노임이 기술노임이기 때문에 일반취로인부임 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활용을 했습니다만 지금은 십장을 쓸 작업이 아니기 때문에 거의가 복지계 직원이 나가서 오전,오후 점검을 하고 취로인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 [redacted] 그래가지고 책임자에게 일괄 몇일있다가 지급을 한다는 얘기지요?

○ [redacted] 개별적으로 통장에다 지급을 합니다.

○ [redacted] 고맙습니다.

○ [redacted] 김종영 위원입니다. 방림면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군에서 재배부한 사업 추진집행에 대해서 이 재배부 자금을 받을때에 사전에 계획이 있어서 받는지, 또 받아가지고 이 사업을 실시할때에 어떤 협의체에 협의를 거쳐서 사용을 하는지, 아니면 면장님이 단독으로 사업을 실시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요.

○ [redacted] 군비 재배정사업은 어느 면이나 거의 똑같겠습니다만, 면장이 사업선정을 해서 과하고 협의가 되서 예산이 성립이 되면 그후에 군비에서 면으로 재배부해서 면에서 사업집행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 읍면에서 하지 아니하고 군에서 입찰을 봐서 사업을 내려주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지금 저희 방림면 같은 경우는 군에서 예를들어 재해가 일어난 이후에 기초보강 공사라던지, 아니면 재배부를 해가지고 면에서 내려줘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답변의 방향이 다른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의 예를 든다면 방림4리 교량가설공사,수동교 같은경우에는 군비로 서서 군에서 면으로 재배부해서 사업을 시행을

해라해서 내려준 사업이 되겠습니다.

○ [redacted] 알겠습니다.

○ [redacted] 3가지만 추가적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읍장님이나 면장님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면개발위원회 운영조례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아십니까?

활용을 하고 계시나요?

("있다" 는이 있음)

○ [redacted] 그럼 3개 읍면에는 위원회가 구성되어서 활용하고 계십니까 여러가지 많이 활용이 될수가 있지요? 사실 번영회는 조례에도 없거든요. 그런데 개발위원회는 조례가 있어서 법적인 뒷받침이 되는데 활용이 많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까지 조례를 이용안하고 있는 읍면도 있는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장사용료를 받고 계시지요?

평창은 얼마나 받습니까?

○ [redacted] 매월 35,000원 내지 40,000원정도 됩니다.

○ [redacted] 그럼 한장에 10,000원도 못받습니까?

○ [redacted] 네.

○ [redacted] 사용료를 받으시면서 느끼신점이 없으십니까?

○ [redacted] 사실상 인건비도 안되고 소요되는 인력만 낭비되는것 같습니다.

○ [redacted] 남자직원이 받습니까 여직원이 받습니까?

○ [redacted] 재무계에 징수하는일은 남자도 하고 여자도 하고 그럽니다.

○ [redacted] 지난번에도 거론이된 부분인데, 시장 사용료가 좋은 재원이면서도 활용을 못하는 부분인것 같아서 여쭈어 봅니다. 대화는 얼마나 받습니까?

○ [redacted] 대화는 매장날 12,000원에서 15,000원정도 수입이 됩니다.

○ [redacted] 그러면 한사람당 얼마씩 받는거지요?

○ [redacted] 제가 조례는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2평당 200원 정도 받습니다. 그다음 짐수레라든가 경운기, 자동차 같은것은 차등을 두고 받고 있습니다.

○ [redacted] 어떻습니까? 받는 기준이 수십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동이

없습니까? 근간에 변동이 있었나요?

○ 大和面長 曺永培 조례가 4-5년전에 한번 개정이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金樂雲 委員 현실화를 시켰는데도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 大和面長 曺永培 네.

○ 金樂雲 委員 시장사용료는 현실화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면장님들 포괄사업비가 있는데 포괄사업비를 집행하실때 그지역 출신 의원님들과 협의를 하시는지, 왜 이런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의원님들이 각 지역에서 여러가지 회망사업들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의원님들 한테로, 그래서 그러한 문제들을 의원님들이 어떤 해결할수 있는 방안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나마 면장님들 포괄사업비를 사용하실때 협조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램이 솔직히 있습니다.

그렇게 하셨다면 바람직 하겠지만, 그러지 못하셨다면 앞으로 의원님들의 입장도 조금씩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委員長 李相薰 보충질의 하실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보충질의 하실위원 없으시면 평창읍, 방림면, 대화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상으로 지난 12월 1일부터 3일간의 일정으로 시작한 행정사무감사는 읍면을 끝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그러면 강평준비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25분 감사중지)

(15시35분 감사계속)

○ 委員長 李相薰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993 년도 평창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에 대한 강평을 본인이 위원여러분을 대표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해의 행정집행을 마무리하는 바쁜시기입니다만, 적극적으로 수감에 임해주신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군의회 개원이래 세번째를 맞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화 시대와 더불어 변화되는 다양한 행정욕구를 되세기면서 여러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선 현행자치법상 3일간의 행정사무감사는, 다양하고 전문화된 지방행정업무의 핵심을 파악하고 군정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기는 매우 어려웠으며 또한 서류감사가 아닌 회의식 감사를 함으로써 적극적인 감사가 불가능한 제도적 모순등으로, 행정에 관한 비전문인인 우리 위원들이 과연 얼마만큼 감사기능을 수행할 수 있었는가 하는 의아심을 갖어 봅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감사기간동안 집행부의 적극적인 협조로 위원들은 3일동안에 군정을 이해하고 관계공무원들은 주민의 대표인 위원들의 의사에 동감할수 있었던 내용들이 다수 제시되였다는 점이 이번감사의 큰 성과와 보람으로 생각됩니다.

이번 감사결과는 본 특별위원회에서 상세한 결과보고서를 작성 채택하여 본회의 의결을 거쳐 집행부에 송부하게 되므로, 오늘 이자리에서는 감사과정에서 모아진 향후시정. 개선이 필요한 일반적인 의견들을 요약해서 제시하는 것으로 강평에 대신하고자 합니다.

먼저 행정집행면입니다.

첫째, 지방자치에 반하는 중앙집권적 행정행태를 개선해야 하겠습니다.

지방자치가 실시된후 3년차가 되었으나 모든행정이 중앙집권의 관치행정 행태를 탈피하지 못함으로써, 지역실정에 맞지 않는 일률적인 행정지시가 시달되고 있으며, 문민정부시대에 걸맞는 창의적이고 자율적인 행정집행보다는 과거 답습적인 전시행정이 계속되고 있으므로, 앞으로는 상급기관의 획일적인 지시에 의한 사업선정추진과 예산반영등은 과감하게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는 군정에 주민의 폭넓은 의사를 적극 반영시켜야 하겠습니다.

군의 중장기계획, 지역의 현안사업등 각종사업의 설계시공등에는 우선 주민을 참여시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계획이 수립추진돼야만 군정의 내실을 기할수 있으며, 민원소지를 사전에 방지할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주민의 참여는 지방자치의 필수적인 사항으로서 반드시 이행토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운영면입니다.

첫째로 효율적인 예산운영 체계가 정착되어야 하겠습니다.

전체예산중 경상사업이나 경상적 경비는 예산운영이 방만하게 집행되었고,

반면에 사업예산은 경직되어 있으며, 책정된 예산이 목적대로 집행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되었으므로, 예산의 공정한 집행체계가 하루속히 정착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둘째는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마련의 시급성 입니다.

자주재원율이 빈약한 우리 군의 실정을 감안해볼때 누적되는 기채의 상환대책과 지방재정확충방안등이 시급하나 이번 감사에서 군자체 특수시책이나 방향제시가 부족했던 점을 아쉽게 생각하면서 우리실정에 맞는 재정확충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사업집행면입니다.

첫째, 년차적으로 추진되는 사업들이 군의 장기적인 재원대책 없이 시행되므로 방치되는 사례가 있었으며,

주민들에게 폭넓은 행정써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한점도 있었습니다.

향후 이러한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역개발에 균형있는 투자가 요구됩니다.

둘째, 년초 군에서 계획한 각종 사업의 추진지연 또는 계획성 있는 마무리에 소홀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군 재정조달과 직결되는 송정택지 조성사업을 비롯한 다수 분야에 적시성이 있는 사업추진이 미흡하였으며, 이들 사업은 실무부서의 실행의지가 미약하였다고 보고 관계공무원의 책임의식 제고가 절실히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공무원의 책임의식면입니다.

지금까지 공무원에 대한 해외여행, 선진지견학등을 실시하고 있으나 이에 따른 전문지식의 적극적인 활용이 미흡했으며 조직관리 측면에서는 업무과중 부서의 인원보강, 인사고충상담을 통한 순환보직등 조직내부의 하의상달 체계로 혁신되어야 하며, 전시행정으로 인한 공무원의 불필요한 동원을 지양하는등 사기진작에 적극 관심을 가져 국가를 위해 봉직할수 있는 공무원의 신분보장을 확고히 할수 있는 대책을 강구 추진해야할 것입니다.

끝으로 감사 수감측면입니다.

의회의 자료요청에 불충분한 자료제출과 답변공무원의 소신없는 답변, 책임회피성답변, 업무파악 소홀등은 과년에 비하여 개선된점이 없는것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의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의례적이거나 관례적이며 순간 모면적인 답변을

하는 공무원들의 의식전환이 적극 요구되며, 의회에서도 방대한 자료요구후 시간적으로 충분한 검토없이 감사에 임함으로 핵심없는 질타만 하는등 감사방법에서도 많은 개선이 요구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사항을 거울삼아 향후 행정사무 감사를 통해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군정을 함께 논의해보는 기회의 자리로 삼는다면, 행정사무감사가 군정발전의 촉매역할을 다할수 있을것이라는 결론을 내리면서 이상으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감사에 임해주신 동료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료의원여러분!

이번으로 세번째 맞는 정기회감사가 새롭게 전개될 94년의 행정성의 터전으로서 국민의 복지증진과 편의행정에 기반이 되여지기를 기대하면서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감사활동결과보고서 작성은 전문위원실에 위임 간사와 협의 작성하여 당특위에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실에서는 간사와 협의 지금까지의 감사활동 결과를 종합하여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 12월 17일 11시로 예정된 제3차 감사특별위원회 전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평창군에 대한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50분 감사종료)

○ 出席委員

委員長	李 相 薰
幹 事	朴 容 泰
委 員	李 致 玉
委 員	朱 泰 元
委 員	金 樂 雲
委 員	郭 文 春
委 員	金 鍾 永

○ 委員아닌 議員

議 長	韓 榮 一

○ 出席公務員

山 林 課 長	吳 興 一

民防衛 課 長　朴 俊 河
保健醫療院長　李 基 魯
保健事業課長　任 永 彬
農村指導所長　劉 載 國
社會指導課長　全 根 鐸
技術補給課長　李 宇 炯
平 昌 邑 長　安 永 實
芳 林 面 長　金 振 石
大 和 面 長　曺 永 培

○ 議會事務課

專門委員　辛 敎 善
議事係長　咸 京 鎬

【 議 席 】

○ 議席表 (328 面에 실음)

平昌郡議會 會議規則 第59條의 規定에 의거 署名 捺印함.

1993年 12 月 4 日

委員長 李 相

專門委員 辛 敎

질의. 서면 답변서

질 의	김 낙 운 위원	답 변 자	평 창 군 수 (산 림 과 장)
회 의	제 20회 평창군 의회(정기회) 제 3 차 특위 (93. 12 . 3)		

<질의 요지>

1. '93산지정화 감시원 근무일지 요구
2. 광업법상 공익사업으로 분류되었을때 가시거리의 적용에 관련된 법규 복사 요구
3. 도로변상 간벌사업 마무리 결과 보고서 요구
4. 초류에 대한 보식작업에 따른 하자보수비 여부

< 답 변 >

붙임 자료 참조

군정감사시 의원 질의 답변 요약

1. 93.12.3 행정감사 3차시 김낙운 의원으로부터

  ○ 93산지정화 감시원의 근무일지를 FAX로 받아 제출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 : 감사당일 FAX로 받아 제출한 바 있으나 아래와 같이 정상근무 하였슴을 보고드리며.

읍.면별 산지정화 감시원 현황

읍면별	인원수	사역기간	연인원	근무자 인적 사항	비 고
계	8	30일	240명		
평 창	1	30	30	박우동	
미 탄	1	30	30	이상모(이태모)	
방 림	1	30	30	장영은	
대 화	1	30	30	이희봉	
봉 평	1	30	30	최근우	
용 평	1	30	30	조은호	
진 부	1	30	30	이영재	
도 암	1	30	30	김종명	

o 광업법상 공익사업으로 분류되었을시 가시거리 적용과 관련된 법규요구에 대하여

답변 : 산림훼손의 제한은 산림법제9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9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하는데 동법시행규칙 제 90조 3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가 산림훼손허가 제한지 고시를 하여야 하는바 본 지역은 고시지역이 아니므로 훼손허가가 가능한 지역이며 또한 동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하면 광업개발을 위하여 훼손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존임지 전용허가 또는 동의 없이 보존임지를 전용할 수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 산림법시행규칙 제24조 및 동 제90조 사본참조)

o 도로변 간벌사업 마무리 결과 보고서 요구건에 대하여

답변 : 본 사업에 대하여는 평창군 산림조합에서 대 집행하였는데 현재 작업이 완료된 상태이나 현지 점검한 바 16필지 21.75ha는 일부 미진하여 보완 지시를 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따로 붙임과 같습니다.

o 도사리 임도시설을 시작하게된경위 과정 동의서 내용 책정동기와 초류 파종 등 하자 부분에 대한 이행여부 및 추진계획에 대하여는

답변 : 임도시설은 산지자원화 2차계획(88-97)에 의하여 88년부터 10년간 총 147㎞확대 하도록 기본계획이 있으므로 이에 의하여 매년 하반기에 익년도 시설예정지를 선정하여 도에 보고후 도에서 현지 답사하여 타당여부 검토후 결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대

평창군 도사리 임도는 91.11.6 용평면장으로 부터 임도개설 건으서가 접수 동 11.15 관계공무원이 현지 답사하여 동 11.20 도에 보고함으로서 예정지로 선정되였으며

, 동 구역내 편입 된 임야는 도사리 산69번지 외 87필지로서 산주는 강릉시 입암동 546번지 문성학원외 40인으로 92. 3.19동의 요청 공문 발송후 92.5월말일까지 모두 동의서를 징구하여 시공하게 되였으며

, 도사리 임도시설지중 초류파종 및 쪽제비 싸리 식재 상황이 극히 불량하여 하자보수 지시하였든바 93.12.6 평창군 산림조합장으로부터 기하자 보수기간을 일실하였으므로 94년도 춘기에 하자보수를 완료하겠다는 계획을 받은바 있으므로 94년도 춘기에 하자보수 완료하고자 합니다.

질 의 · 서 면 답 변 서

질 문	김 낙 운 의원	답 변	평 창 군 수 (보건의료원장)
회 의	제20회 평창군의회(정기회) 제 3 차 특위 (93. 12 . 3)		

<질의요지>

○ 1년에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를 이용하는 환자수

<답 변>

○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를 이용하는 환자수는 붙임 환자 진료실적을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소환자진료실적

'93. 11. 30 현재 (단위:명)

지소별	합계		일반		치과	
	실인원	연인원	실인원	연인원	실인원	연인원
합계	31,839	117,446	23,468	104,542	8,371	12,904
미탄보건지소	3,942	14,588	2,812	12,686	1,130	1,902
방림보건지소	2,617	7,969	1,589	6,458	1,028	1,511
대화보건지소	6,477	28,727	6,096	28,005	381	722
봉평보건지소	4,168	13,398	2,872	11,356	1,296	2,042
용평보건지소	2,920	8,180	2,156	7,196	764	984
진부보건지소	6,357	25,769	4,570	22,763	1,787	3,006
도암보건지소	5,358	18,815	3,373	16,078	1,985	2,737

보건진료소환자진료실적

'93. 11. 30 현재

진 료 소 명	실 인 원	연 인 원	비 고
합 계	17,790	59,923	단위 : 명
다수보건진료소	1,547	4,387	
고길보건진료소	614	2,279	
마지보건진료소	1,772	6,932	
계촌보건진료소	2,269	9,960	
가평보건진료소	1,182	3,557	
개수보건진료소	1,145	3,472	
신리보건진료소	633	1,714	
면온보건진료소	731	3,979	
등매보건진료소	882	3,010	
무이보건진료소	598	2,302	
속사보건진료소	1,266	2,800	
두일보건진료소	527	1,667	
거문보건진료소	1,180	3,210	
수항보건진료소	837	2,436	
유천보건진료소	1,213	4,087	
용산보건진료소	1,394	4,131	